

발간등록번호

11-1170216-100001-14

# 행정규칙 인안심사 기준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www.moleg.go.kr](http://www.moleg.go.kr)



# CONTENTS

## 목 차

<b>1</b>	<b>행정규칙 일반론</b>	
1.	행정규칙의 개요	002
2.	행정규칙의 근거와 성립·효력 요건	012
3.	행정규칙의 등재·관리	014
<b>2</b>	<b>행정규칙 입안·심사 절차</b>	
1.	행정규칙의 입안 절차	018
2.	행정규칙의 심사 절차	027
3.	행정규칙 비공개 시 법제처 통보 등	029
<b>3</b>	<b>행정규칙 입안·심사 원칙</b>	
1.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원칙	032
2.	행정규칙 입안 실무	040
<b>4</b>	<b>주요 분야별 입안·심사 세부 기준</b>	
1.	총칙	054
2.	주제별 입안·심사 기준	057
가.	인·허가 및 신고	057
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067
다.	과징금·과태료 등	073
라.	수수료·사용료·부담금 등	078
마.	각종 지원·보상의 제한	082
바.	보고·신고·자료제출 등	083
사.	공동이용 행정정보	088
아.	권한의 위임·위탁	089
자.	위원회	096
차.	지방자치제도	102
카.	차별적·권위적 용어	104
타.	부칙	104
파.	약칭과 준용	107
<b>5</b>	<b>부록</b>	
1.	관계 법령	112
2.	행정규칙 제정·개정 체크리스트	142



# 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



## 행정규칙 일반론

---

1. 행정규칙의 개요
2. 행정규칙의 근거와 성립·효력 요건
3. 행정규칙의 등재·관리



# 행정규칙 일반론

1. 행정규칙의 개요
2. 행정규칙의 근거와 성립·효력 요건
3. 행정규칙의 등재·관리

## 1. 행정규칙의 개요

### 가. 행정규칙의 정의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또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정의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4조의3제1항에서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훈령·예규등”으로 약칭하고 있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조제1항에서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규정·규칙·지침 등을 “훈령·예규등”으로 약칭하고 있으며, 이를 실무상이나 강학상 행정규칙이라고 부르고 있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4조의3(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 ①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유지·관리되어야 한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조(기본원칙)** 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 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인정 여부)

### 1) 학설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행정조직 내부에만 일면적·편면적 구속력을 가질 뿐 직접 국민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비법규설, 행정규칙 중 재량준칙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국민에 대하여도 간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미치게 된다는 준법규설, 행정권은 그 권한의 범위에서는 자주적인 법 형식을 위한 규범 정립 의사나 독립적인 규율권을 가지며 그것에 의하여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는 법규설 등이 있다.

한편,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규칙을 유형별로 나누어 그 법적 성질에 대해 설명하기도 한다. 행정규칙 중 중요한 유형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있다. 이러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아래 ‘판례의 입장’ 참조).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정하는 훈령, 고시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유형에 대해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2) 판례의 입장

판례에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행정규칙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훈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서 훈령, 예규, 통첩, 지시, 고시 등 그 사용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서 준거할 준칙 등을 정하는데 그치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54)하였다.

1

2

3

4

5

한편, 판례에서도 행정규칙 유형 중 법령 위임에 따른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해당 법령의 수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판시(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5676)하여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위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 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판단(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1헌마25 결정)하고 있다. 또한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고 판단(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90헌마13 결정)하고 있다.

### 3) 소결

오늘날 국민생활의 행정의존도가 높아지고 각 분야의 행정작용에서 행정재량이 넓게 인정 되는 현실에서 행정규칙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행정규칙의 현실적 기능과 그에 대한 사법적(司法的) 통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것이 될 것이다.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규제도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판례의 입장과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정을 고려해 볼 때, 모든 행정규칙에 법규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적어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내용을 규정한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성이 인정될 수 있다.

## 다. 행정규칙의 종류

### 1)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 가) 내부규칙(조직규칙)

내부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기관의 설치·조직이나 내부적 권한분배,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율하는 행정규칙을 의미한다. 전결권을 정하는 위임전결규정, 사무분장규정 등이 그 예이다.

## 판례

### 행정권한이 내부위임된 경우 권한행사의 방법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94누6475, 1995.11.28.).

1

2

3

4

5

## 판례

## 전결규정을 위반한 행정처분

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사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97누1105, 1998.2.27.).

## 나) 집행규칙

## (1) 법령해석규칙

법령해석규칙은 법규의 적용, 특히 법규상 불확정 개념을 적용할 때에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통일시키고 그 적용 방향을 확정함으로써 행정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이다.

## 예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고용노동부예규 제2015-9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 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 1년에 못 미치는 몇 월, 며칠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 근로 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

## (2) 재량준칙

재량준칙은 통일적이고 동등한 재량행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관한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이다.

### 예시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호)

**제5조(지속적이고 성실한 협조 여부의 판단)**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요건 중 "성실하게 협조" 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자진신고자 등이 알고 있는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지체 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
2.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 등이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3. 사실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하였는지 여부
4. 임직원(가능하다면 전직 임직원 포함)이 위원회의 조사, 심의(심판정 출석 포함) 등에서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
5. 공동행위와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였는지 여부

### 판례

#### 재량준칙의 대외적 구속력 인정요건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중략)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이러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규정과 그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1

2

3

4

5

다) 위임규칙

(1) 법률대위규칙(法律代位規則)

법률대위규칙 또는 법률대체규칙은 행정권 행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법령에 규율이 없는 영역에서 행정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법률이 전혀 없거나, 법률에 행정권의 발동근거만 두고 있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권의 행사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경우에 발해지는 행정규칙이다.

예시

**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지침  
(방위사업청예규 제866호-폐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14조의 제1항에 따라 방산물자등 및 군용물자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 시장개척활동 및 온라인 전시관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범위,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방위사업청장은 전시회에 참가하는 자가 집행한 실제 지출 비용에 대해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별표1] 전시회 참가비 지원 기준

구 분	지원 대상(참가형태)	지원항목	지원율	지원한도
해외 전시회	공동참가 주관 협회 또는 단체 (중소기업관)	1.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 전시물 운송비 (국내출고지-전시장 부스-국내입고지) * 국내 발생하는 운송비는 제외 3. 통역비 4. 홍보물 제작비 5. 공동교통비 (개별참가 중소기업 포함)	100%	3억
	중소/중견기업 (개별참가)	1.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 전시물 운송비 3. 홍보물 제작비	80%	1천만원
국내 전시회	중소/중견기업 (개별참가)	1.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 전시물 운송비 3. 홍보물 제작비	80%	5백만원

##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한 행정규칙으로, 행정규칙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내용은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하여 판례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일체가 되는 한도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된다고 본다.

## 2) 형식을 기준으로 한 분류

### 가) 훈령

훈령(訓令)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 예시

####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교육부훈령 제459호)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6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교육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0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 ⑦ (생략)

## 나) 예규

예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이다.

### 예시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29호)

- 제4조(신고의 접수)** ①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 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 다) 고시

고시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규적 사항을 정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고시는 그 내용이 일반적·추상적인 규율인 경우에만 행정규칙에 해당하며 고시의 내용이 단순한 사실의 통지인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고시가 일반적·구체적 성질을 가질 때에는 일반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법령의 위임에 따른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유형의 고시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한편, 일반적·추상적 규율로서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고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 3제2항 본문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재하여야 하고, 일반처분에 해당하는 고시나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지하는 고시라도 행정청이 결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해 고시를 발령한 경우라면 법제정보시스템(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재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25-26호)**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증권 발행 공시 및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3조(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159조제4항 및 영 제168조제3항제9호에 따라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제조·서비스업 및 금융업으로 구분한다)
2.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예시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고시(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8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

제 목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쉬어로즈	2025-02-17	선정성, 폭력성	2025-03-17
바람개비	2025-02-17	선정성, 폭력성	2025-03-17
살인청부업자	2025-02-17	선정성, 폭력성	2025-03-17

(이하생략)

1  
2  
3  
4  
5

## 2. 행정규칙의 근거와 성립·효력 요건

### 가. 행정규칙의 근거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인정한 직무권한에서 발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법령의 수권(授權)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는 행정규칙은 반드시 법령의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

### 나. 행정규칙의 성립·효력 요건

#### 1) 주체에 관한 요건

행정규칙의 발령권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는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을 발령할 수 있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은 “각급 행정기관”으로 그 주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각급 행정기관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실제로 행정규칙을 제정(制定)하는 기관을 살펴보면, 각 부·처·청은 물론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정기관, 감사원·국가정보원 등 대통령 소속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그 밖에 한국정책방송원·영상물등급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까지 다양하다.

#### 2) 내용에 관한 요건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고 일반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를 규율하는 본래 의미의 행정규칙과 달리 행정조직 외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그 범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실질에 있어서는 법령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범위에 속한 것만을 규정해야 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상위법령이 정한 규제 내용을 강화해서도 안 된다.

또한 상위법령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도 상위법령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것에 한정하여 해당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충적 사항을 정해야 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규정 상호 간의 모순과 중복이 없어야 하고, 표현이 명확해야 한다.

### 3) 형식에 관한 요건

행정규칙의 경우 형식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조문 형식, 시행문 형식, 회보(回報) 형식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다.

### 4) 발령에 관한 요건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는 달리 공포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행정규칙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명자(受命者)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그 때부터 구속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행정규칙이 행정조직 내부에만 적용되는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생활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규범력을 갖는 행정규칙인 경우에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규범력이 인정된다면 수범자(受範者)인 국민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규칙 중 법규적 효력이 인정되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을 통하여 공고하여 규범의 효력을 받게 되는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 행정규칙 중 법령의 위임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 고시의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3. 행정규칙의 등재·관리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정보법”이라 함) 및 법령정보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행정규칙이 법령정보로 관리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이 제정·개정(改正)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지체 없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행정규칙 전문(全文), 조문별 제정·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관한 설명자료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고(법령정보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법령정보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다만, 법령정보법 제5조제2항, 법령정보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는 행정규칙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령한 행정규칙이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조 및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한 행정규칙은 등재 대상 행정규칙이 아니다.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5조(법령정보의 수집)** ②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 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직접 등재하여야 한다.

1. 법제처장이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법령정보
2.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할 경우 정확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법령정보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법령정보의 수집)** ②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령등
2.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령관련정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이하 “행정규칙”이라 한다)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행정규칙 전문(全文)
  2. 조문별 제정·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관한 설명자료
- ④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등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4조의3(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예규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예규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감사원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발령하는 훈령·예규등
2.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고시·공고
3. 일일명령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될 것이 예정되지 아니한 일회성 지시

**제9조(훈령·예규등의 관리)**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 또는 부속기관 소관의 훈령·예규등이 이 훈령에 따라 발령·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2

3

4

5





# 2

## 행정규칙 입안·심사 절차

1. 행정규칙의 입안 절차
2. 행정규칙의 심사 절차
3. 행정규칙 비공개 시 법제처 통보 등

### 1. 행정규칙의 입안 절차

#### 가. 행정규칙 일반 입안 절차

##### 1) 입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주무부서(주로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가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안”을 작성하여 관계 국장과 법제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이 기안문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행정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필요성, 적법성, 적절성, 조화성,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 2) 행정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칙을 입안하는 경우 해당 행정규칙이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예고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행정규칙의 발령안을 행정예고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아울러, 행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확대를 위해 해당 제정·개정안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동안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법원에서도 그 법규명령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밖에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행정규칙 및 기술규정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하 “WTO TBT협정”이라 함) 부속서 1 “1.기술규정”에서 정의한 것을 말함]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WTO TBT협정 부속서 1 “3. 적합성 평가절차”에서 정의한 것을 말함)와 관련된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 행정예고를 하고, 기술규정·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행정규칙의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WTO 사무국과 자유무역협정 상대국가에 예고내용을 통보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 상대국가에 대한 통보는 통보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7조 및 제8조 참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 존속기한 연장 포함)하려면 규제 신설·강화의 필요성, 규제 목적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해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한편,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행정청은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 및 그 결과에 관한 통계<sup>1)</sup>를 작성하고,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해당 통계를 관보·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책등안(案)의 취지, 주요내용 등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행정청은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제도 및 계획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총 예고 건수(제1호), 고시, 훈령, 예규 등 예고 대상별 건수(제2호), 관보·공보, 인터넷, 신문·방송 등 예고 매체별 건수(제3호) 예고 기간별 건수(제4호)

### 3) 부처의견수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정규칙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기간은 행정규칙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규제 행정규칙 사전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규제심사를 받는 “법령등”의 범위를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 결과의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한 후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 의견,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2항).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문별 제정·개정 이유서,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등을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도 함께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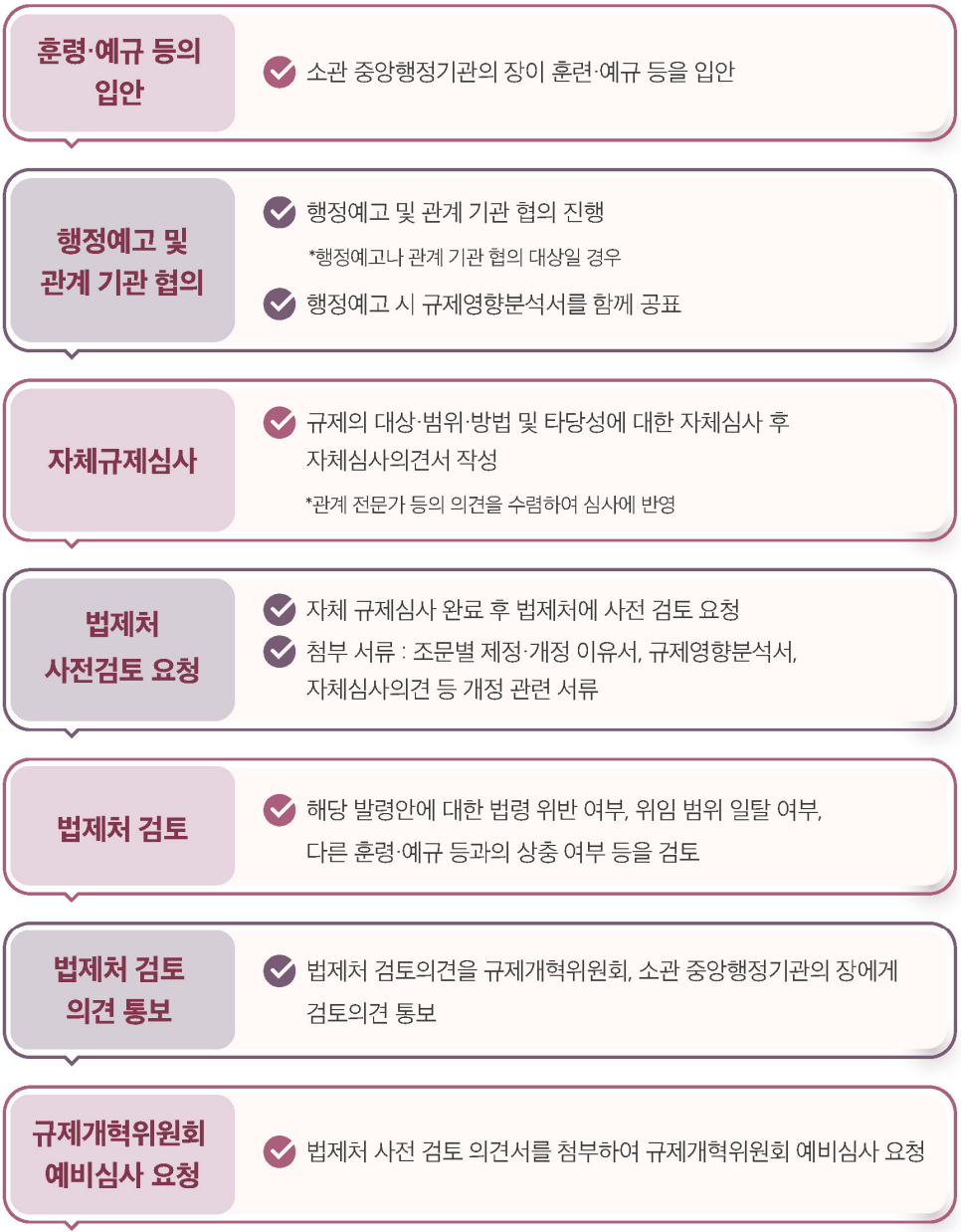
검토요청을 받은 법제처장은 해당 훈령·예규 등의 제정·개정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령에 위임 근거가 있는지 또는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다른 훈령·예규 등과 중복·상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검토의견을 알려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제2항).

#### 참 고 훈령·예규등에 대한 법제처의 입안지원

-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법령안,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 훈령안 및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의 입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입법을 추진하려는 발령안에 대하여 입안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제3항)

Ⅰ 규제 행정규칙 사전검토 업무 처리절차 Ⅰ



1  
2  
3  
4  
5

## 5) 발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 예고, 법제처장과의 협의 등 행정규칙의 발령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행정규칙을 발령하고 이를 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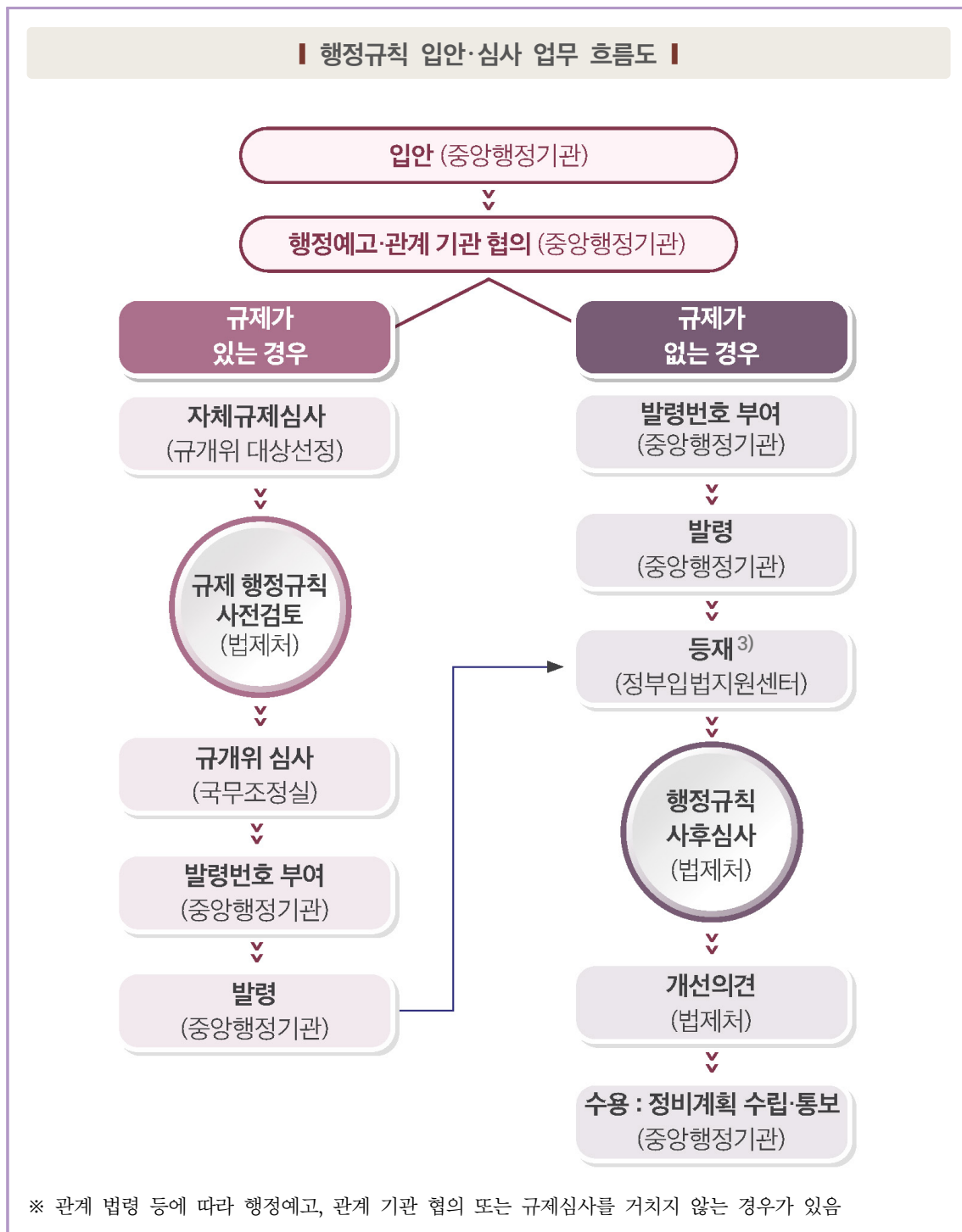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법규문서 등의 번호)**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서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부여한다.

1.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법규문서에는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이하 “누년 일련번호”라 한다)를 부여한다.
2. 영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시문서 중 훈령 및 예규에는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명령에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매년 새로 시작되는 일련번호로서 연도표시가 없는 번호(이하 “연도별 일련번호”라 한다)를 부여하며, 지시에는 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이하 “연도표시 일련번호”라 한다)를 부여한다.
3.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공고문서에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공동고시(특정 고시가 둘 이상 기관의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의 경우에는 하나의 고시에 대하여 소관 기관 모두가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공동고시를 발령하여야 한다<sup>2)</sup>. 법률, 대통령령 및 부령 등의 법령과 달리 행정규칙인 공동고시는 발령 전에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공동고시 개정 시 일부 공동고시 소관 기관이 해당 고시를 발령하지 않거나 공동 소관 기관이 발령한 고시의 내용이 조금씩 상이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동고시를 개정하려는 기관은 공동고시의 발령 전에 다른 공동 소관 기관과 미리 협의를 거치고 확정된 고시 내용을 공유하여 공동고시 개정 시 공동 소관 기관별 각각의 발령번호가 부여된 하나의 고시가 발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고시의 형식과 개정방식에 대해서는 Ⅲ.2. 행정규칙 입안실무를 참조한다.

2) 하나의 부에서 다른 부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의견 등을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예: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하는 경우에는 공동고시가 아니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부의 단독 소관 고시로 본다.



3) 비공개 행정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행정규칙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규칙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1  
2  
3  
4  
5

## 나.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의 입안 절차 등

### 1) 입안

대통령비서실 외의 행정기관에서 대통령훈령을 기안하려는 때에는 기안단계부터 그 필요성 등에 관하여 사전에 대통령비서실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며(「대통령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국무총리실 외의 행정기관에서 국무총리훈령을 기안하려는 때에는 국무조정실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국무총리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 2)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르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도록 하고 있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규정 제14조에서 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은 원칙적으로 입법예고의 대상은 아니다.

다만,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이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 3) 의견수렴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은 그 규정 내용이 어느 하나의 부처 또는 기관의 소관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부처나 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련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대통령훈령 또는 국무총리훈령을 입안하려는 부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를 준용하여 그 훈령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훈령 또는 국무총리훈령의 시행과정에서 관계 부처로부터 원활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이다.

대통령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훈령안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훈령안의 내용을 대통령비서실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되, 훈령의 발령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하려는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대통령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및 제2항).

국무총리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국무총리훈령안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훈령안의 내용을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되, 훈령의 발령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하려는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국무총리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및 제2항).

#### 4) 법제처 심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훈령 또는 국무총리훈령의 발령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안의 심사를 요청하고, 법제처장은 대통령훈령안 또는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훈령안 또는 국무총리훈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훈령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해야 하며, 법제처는 해당 훈령안에 대한 심사 후 결재본과 함께 훈령안 심사확인증을 소관 부처에 송부해야 한다.

#### 5)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결재

소관 부처에서는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대통령훈령안 또는 국무총리훈령안에 대하여 결재문서를 작성하여 훈령안과 법제처 심사확인증을 붙임문서로 첨부하고, 안전요약서를 결재본 앞에 첨부하여 대통령(대통령훈령의 경우)이나 국무총리(국무총리훈령의 경우)의 최종결재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의 결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결재문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실에서는 대통령훈령에 대하여 접수 → (국무조정실장 안전요약서 결재) → 국무총리 결재 → 대통령 결재 등의 절차를 거쳐 결재과정을 진행하며, 소관 부처는 국무총리실로부터 결재원본을 받게 된다. (국무총리훈령의 경우, 국무총리실에서는 국무총리훈령에 대하여 접수 → (국무조정실장 안전요약서 결재) → 국무총리 결재 절차를 거쳐 결재과정을 진행)

1

2

3

4

5

## 6) 원본 보관과 관보 게재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5항제14호에 따르면 대통령훈령의 원본은 법제처에서 보관하도록 함에 따라 소관 부처에서는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대통령훈령 원본을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에 제출해야 한다.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는 대통령훈령 원본을 제출받은 후 해당 대통령훈령에 대하여 훈령번호를 부여한다(실무적으로는 소관부처가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대통령훈령 심사안에 대하여 국무총리 부서 및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로부터 훈령번호를 부여 받는다). 대통령훈령의 발령을 위하여 소관 부처의 장은 법제처의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앞서 부여받은 훈령번호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한편, 국무총리훈령의 경우(국정관리시스템 이용)에 소관 부처의 장은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은 훈령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실에서 훈령번호를 부여받아 법제처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하며, 국무총리 결재원본은 자체 보관·관리한다.

## 2. 행정규칙의 심사 절차

### 가. 행정규칙 일반 심사 절차

#### 1)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등재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지체 없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행정규칙 전문(全文), 조문별 제정·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관한 설명자료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 2) 행정규칙 사후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행정규칙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유지·관리되어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의2에 따르면, 법제처장은 제2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등재된 훈령·예규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처장으로부터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관련 법령이나 해당 훈령·예규등에 반영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선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앞으로 조치할 계획인 경우에는 그 계획을, 그리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각각 통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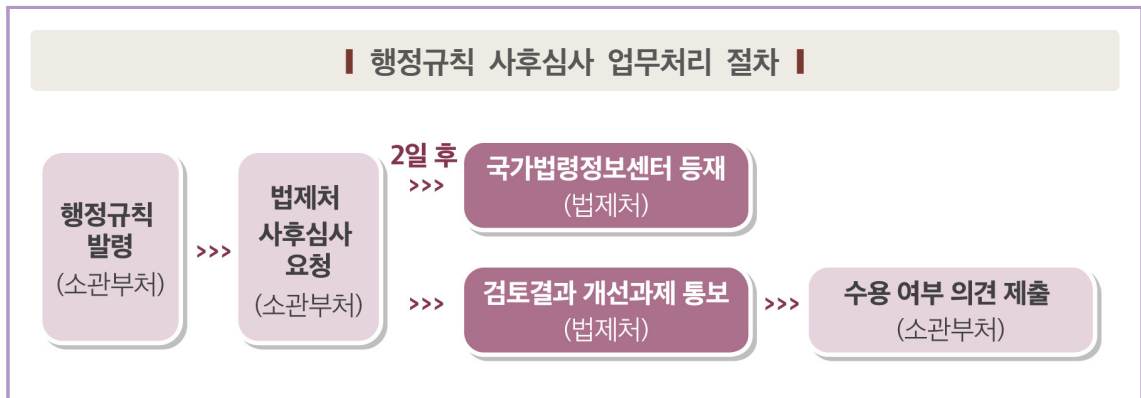
1

2

3

4

5



### 3) 행정규칙의 국회 제출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 나.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의 심사 절차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법제처장은 해당 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행정규칙에 대한 사후심사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 3. 행정규칙 비공개 시 법제처 통보 등

#### 가. 행정규칙 공개 원칙

법령의 위임 및 집행 사항, 업무처리절차 등을 정하는 행정규칙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 국민의 알권리 및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규칙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규칙을 비공개하되, 행정규칙을 비공개하려는 경우에도 그 일부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부분만 비공개하도록 한다.

행정규칙은 공개가 원칙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의 투명성 원칙 등을 고려하여 행정규칙의 비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비공개 결정 시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 판단기준, 관련 판례, 재결례 및 해석례 등<sup>4)</sup>과 함께 다른 행정기관의 유사 제명의 행정규칙이 공개되고 있는지도 고려하여 범정부적으로 통일되고 균형 있는 행정규칙 발령·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행정규칙 비공개 시 법제처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행정규칙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규칙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부분 비공개하는 행정규칙도 비공개 부분 및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 발간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등을 참조하면 관련 판례, 재결례 등을 비공개 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다.

**참 고**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2021. 8., 행정안전부)

- 법령, 고시 등
  - 법령, 입법예고안, 국회제출 법률안, 이유서, 신구조문 대조표 및 고시는 원칙적으로 공개
  - 다만,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와 협의·조정  
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해당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훈령, 지침 및 법령질의 조회서·답변서
  - 훈령, 지침 및 법령질의 조회서, 답변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 다음에 열거하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i) 출입검사, 조사, 단속, 감사 등 권한의 행사 (ii) 조세의 부과·징수 (iii) 심사, 검정, 인정  
등 적격성·적합성 판단 (iv) 섭외·교섭의 방침 또는 판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  
으로써 탈법행위의 조장, 법령위반 행위의 교묘화·은폐를 초래하거나 교섭 등의 난항을 초래하는  
등 당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교정시설 또는 입국자 수용시설의 운용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보안경비 또는 피수용자의  
처우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직원의 인사사무, 청사·시설관리 또는 사무의 진행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할 때 그 관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3

## 행정규칙 입안·심사 원칙

---

1.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원칙
2. 행정규칙 입안 실무

# 3

## 행정규칙 입안·심사 원칙

1.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원칙
2. 행정규칙 입안 실무

### 1.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원칙

#### 가. 적법성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2호).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법령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세부 기준 등은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행정규칙에 규정하되, 법령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 시** 법령에 직접 규정해야 하거나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 문서의 도달시기 등 기간 계산에 관한 사항
- 특정한 명칭 사용 금지 등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
- 승인·인가·허가·면허·결정·확인·지정·등록·신고 등에 관한 사항
  - 국민이 일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승인 등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는 사항
  - 승인 등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때에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 관한 사항
  - 승인 등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때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
  - 결격사유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격 취득·승인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승인 등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 승인 등의 변경이나 취소에 관한 사항
- 보조금·출연금 등 수익적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 보조금·출연금 등의 회수, 취소 등을 받은 자에 대한 보조금 등의 수령 제한에 관한 사항
- 국민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력, 학력, 결격사유, 지가 등의 산정기준, 특허 등의 분류기준, 자격기준, 수수료의 금액 등에 관련된 사항
- 개선명령 등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관한 사항
-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이나 그 예외에 관한 사항
  - 법령에서 정한 취소사유, 구성인원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법령에서 정한 허가 우선순위 등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 법령에 없는 새로운 신분이나 자격을 창설하는 경우
  - 법령에서 정한 자격, 면제·기간 등을 제한하는 경우
  - 법령에 따른 제출서류를 면제하는 사항
  -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사항을 승인을 받아 할 수 있게 하는 사항
  - 법령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을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사항
-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과 행정업무 수행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 출입·검사,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조합 등 민간기관의 결성, 운영과 해산 등에 관한 사항

소관 행정규칙으로 다른 부처 또는 다른 부처의 소속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행정규칙의 규율 범위를 넘는 것으로 「정부조직법」과 해당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소관 사항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부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국무총리에게 위임한 사항을 부처 훈령 등으로 규정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보고·승인 등을 하도록 하면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관 사항을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2

3

4

5

## 나. 적절성

행정기관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3호).

일정한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규정해야 하고, 첨부 서류를 법령의 위임 없이 추가해서는 안 되며,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특히 현재 「전자정부법」에서는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 정보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당사자가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한편, 업무처리기준을 만들 때에는 국민이 지킬 수 없거나 지키기 곤란한 사항을 정하지 않도록 하며,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사항만을 요구해야 한다.

### 예 시 불합리한 사항을 규정한 사례

- 개별적인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의무를 부과한 경우
- 개선명령을 받아 개선 후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은 자에게 또 다시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도록 한 경우
- 보고의무 등을 정하는 경우 연휴, 공휴일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고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
- 행정기관이 아닌 사업자에게 행정기관의 게시판에 일정사항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행정기관이 해야 할 업무를 민원인에게 하도록 하는 경우
- 위원회 규정에서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한 경우
- 위원회의 서면회의 개최사유를 법령에서 정한 경우와 달리 정하는 경우
-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할 때 사업 수행 능력과 관련이 없는 연령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 이미 행정기관에 제출되어 있거나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 특정인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혜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다. 조화성

다른 행정규칙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4호).

행정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훈령·예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고려하여 같은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기준을 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라. 명확성

국민이 행정규칙을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해야 하며,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5호).

행정규칙에 규정하려는 경우 포괄적인 용어나 불명확한 용어 등을 사용하여 집행 공무원의 임의적 해석에 따라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 예 시 불명확한 규정

- 타인에게 위압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자
- ...에 부적합한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장관이 선정한 자(그 선정 기준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필요한 적정한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출 것

한편, 현재 행정규칙을 발령하는 체계나 구성 등이 다양하여 수범자가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상황이므로, 수범자의 이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체계에 따라 행정규칙을 발령해야 한다.

1

2

3

4

5

## 마. 일몰제 설정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해당 행정규칙에 명시해야 하며,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거나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에는 재검토조항을 설정해야 한다.

### 1) 훈령·예규 등에 대한 일몰제 기준

#### 가) 일몰제 적용 대상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제7조제4항)

일몰제 적용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행정규칙이나,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외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일몰제 대상이 아닌 행정규칙에 대하여도 일몰제를 준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 “행정기관 내부운영”이란 공무원의 보직관리, 공무원 제안 등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이나 위원회 조직·운영 등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만을 말하며, 국민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제외한다.



#### 일몰제 설정 제외 대상(「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

- 보직, 승진, 기록관리, 복무규율, 위원회 구성·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 (내부 행정규칙)
  1. 공무원 인사·복무와 내부운영에 관한 규정
    -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성과관리규정」, 「공무원 복제규정」, 「공무원 당직 및 근무 규정」, 「성희롱 예방지침」, 「공무원 행동강령」,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사무 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공무원제안규정」, 「자료관리규정」 등
  2. 각종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 기획단, 자문단, 센터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

## 나) 존속기한과 재검토키한 설정기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2항<sup>5)</sup>)

일몰제 적용 대상 행정규칙에는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의 존속기한(3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실효되고 필요 시 다시 발령하는 것을 말함)을 설정하되, 법령에 해당 행정규칙에 대한 직접적인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나 행정규칙의 폐지 후 재발령이 곤란한 경우로서 법제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재검토키한(3년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존속 필요성 여부를 검토 후 계속 존속이 필요 시 효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함)을 설정한다.

또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상위 법령이나 해당 행정규칙에 3년 이상의 존속기한이 설정된 조항이 있거나 성질상 3년 이상 적용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을 설정할 수 있다. 법제처장과 협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위 법령에 3년 이상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이 설정된 경우로서 상위 법령과 다른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을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 해당 행정규칙 조항에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이 설정된 경우
- 그 밖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등 3년 이내로 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은 해당 행정규칙에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발령한 날부터 진행하는데, 존속기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해당 행정규칙은 실효된다.

따라서 행정규칙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몰 기한이 만료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존속기한을 설정한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개정하거나 해당 행정규칙을 폐지한 후 재발령
- 재검토키한을 설정한 경우: 행정규칙을 검토한 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하는 것도 가능함

5)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존속기한은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특정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반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른 존속기한은 해당 훈령·예규 등 자체에 대한 것이다.

또한 행정규칙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행정규칙이 실효 되더라도) 해당 행정규칙의 폐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 고** 존속기한과 재검토키한

- 존속기한과 재검토키한은 일몰제가 적용되는 행정규칙에 설정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존속 기한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경과 시 행정규칙의 효력이 상실되어 필요한 경우 행정규칙을 폐지 후 재발령해야 하는 반면에 재검토키한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경과 시 행정규칙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2) 훈령·예규 등에 대한 일몰조항 규정 방법

### 가) 존속기한형 일몰제의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본칙’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규정하도록 하고,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존속기한을 설정한 경우 존속기한 경과 시 그 효력이 상실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연혁 행정규칙”으로 관리된다.

**제0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나) 재검토키한형 일몰제의 경우

재검토키한은 원칙적으로 ‘본칙’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규정하도록 하고,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제0조(재검토키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3) 훈령·예규 등에 대한 일몰조항 설정 절차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① 각 부처 입안 → ② 관계 기관 협의, 행정예고 등(필요 시) → ③ 규제개혁위원회 심사(필요 시) → ④ 존속기한과 재검토키한 등 법제처 협의(필요 시) → ⑤ 각 부처 발령 → ⑥ 법제정보 시스템(정부입법지원센터)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을 정하려는 경우로서 법제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규칙을 발령하기 1개월 전(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령 후 지체 없이)까지 해당 훈령·예규 등의 원문을 법제처에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해진 훈령·예규·고시·공고 중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것(의무적 규제심사 대상)은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에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법제처 협의 대상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훈령·예규 등에 대하여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을 정하지 않으려는 경우
-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사유로 훈령·예규 등을 폐지·제정하기 곤란하여 재검토키한을 설정하려는 경우
-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3년 이상으로 정하려는 경우

1

2

3

4

5

## 2. 행정규칙 입안 실무

### 가. 형식의 선택

#### 1) 법령 또는 행정규칙 중 선택

행정규칙을 입안할 때는 먼저 규정하려는 내용에 맞추어 그것을 담은 그릇, 즉 형식의 선택이 필요하다. 규정하려는 내용이 법령에서 행정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면 당연히 행정규칙에 규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내용이라면 먼저 법령과 행정규칙 중 어느 것에 규정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선택해야 한다.

내용이 행정조직 내부만을 규율하는 것이라면 행정규칙에 이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국민의 사회생활 또는 경제생활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 밖에 국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는 국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하고 알 수 있는 법령에 이를 규정해야 하고 행정기관이나 소속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규칙에 이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조직 내부만을 규율할 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도 이것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의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사항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규칙에 규정하기 보다는 법령에 이를 규정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과 그 밖의 행정규칙 중 선택

행정규칙은 발령권자에 따라 대통령이 발령하는 행정규칙, 국무총리가 발령하는 행정규칙,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장이 발령하는 그 밖의 행정규칙으로 분류된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발령하는 행정규칙의 형식은 대부분 훈령의 형식으로 발령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 입안하는 행정규칙의 형식은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이나 그 밖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공고 등)으로 구분되며, 행정규칙을 입안할 때에는 우선 이 세 가지 형식 중에서 어떤 형식을 선택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정하려는 내용이 어느 하나의 부처 또는 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부처나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내용이라면 대통령훈령이나 국무총리훈령에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고, 어느 하나의 부처나 기관의 소관 업무에만 관계되면 해당 부처나 기관이 발령하는 행정규칙에 규정해야 한다.

만약 어느 부처나 기관이 발령하는 훈령 등의 행정규칙에서 해당 행정규칙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부처나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한다면 해당 규정은 소관사항의 원칙에 위반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 간의 선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훈령으로, 국무총리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훈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통령훈령은 대통령이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시하는 내용을 담을 때 선택하는 형식으로서 대통령비서실이나 대통령 소속기관(예: 국가정보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주로 입안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발령하나 그 밖의 부처에서도 대통령훈령을 입안할 수 있다. 일반 부처에서 대통령훈령을 입안하는 경우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다수 부처와 관련되는 중요 정책 사항에 관한 대통령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입안(예: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하는 경우, 해당 훈령의 수명기관에 대통령 소속기관이 포함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국무총리훈령은 국무총리가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시하는 내용을 담을 때 선택하는 형식으로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총리 소속기관(예: 법제처, 인사혁신처 등)이 주로 입안하여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아 발령하나 그 밖의 부처에서도 국무총리훈령을 입안할 수 있다. 일반 부처에서 입안하는 국무총리훈령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이나 다수 부처와 관련되는 중요 정책 사항에 관한 국무총리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입안(예: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 등)되며, 특히 국무총리훈령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협의·자문위원회나 일반부처 소속으로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자문위원회, 지원단·기획단 등의 작업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국무총리훈령의 형식으로 입안되는 경우가 있다<sup>6)</sup>.

6) 지원단·기획단 등에 정원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형식의 직제로 규정해야 하고, 정원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만 훈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

### 3) 행정규칙의 종류 선택

행정규칙은 그 형식에 따라 협의의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어느 형식의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규정하려는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일반적·추상적인 사안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중에서 어느 형식으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무상으로도 일부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 “행정업무운영 편람”(행정안전부 발간)의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에 관한 규정과 실무상 운영 사례를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그 형식 선택의 대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규문서: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3. 공고문서: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4.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5. 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일반문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우선, 법령에서 “...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결정·고시한다.”로 규정하여 행정규칙의 형식을 고시로 정한 경우, 또는 “...에 관한 사항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해야 한다.”로 규정하여 행정규칙의 형식을 공고로 정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고시 또는 공고의 형식으로 발령해야 한다. 그러나 법령에서 “...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로 규정하거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하는 행정규칙이 아닌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내용을 고려하여 그 형식을 판단해야 한다.

“훈령”이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고, “예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이며, “고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이고, “공고”는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이다. 따라서 행정기관 내부를 직접적인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훈령 또는 예규의 형식으로, 일반인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형식으로 발령해야 한다.

1

2

3

4

5

예컨대, 「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법무부예규 제960호)과 같이 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처리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이라도 그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고시 형식으로 발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예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행정규칙의 형식이며, 그 나머지의 경우나 형식 선택이 어려울 경우에는 훈령의 형식으로 발령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무 사례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규는 그 성격상 통상적으로 제명을 “○○지침”으로 하여 발령하는 경우가 많으며(예: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등), 제명을 “○○예규”, “○○규정”, “○○규칙”, “○○기준”, “○○요령” 등으로 하여 발령하는 경우도 많다(예: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병역판정검사 규정」, 「검문소 운영 규칙」,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등).

일부 부처의 경우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예규의 형식에 의해야 할 내용을 훈령의 형식으로 발령한 경우(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등)도 있으나 적절한 형식선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훈령의 형식으로 발령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와 같이 예규의 형식에 의하는 경우 외에는 훈령의 형식으로 발령하는 것이 적절하다. 일부 부처의 경우 자문위원회나 기획단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예규의 형식으로 발령한 사례(예: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등)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예규보다는 훈령의 형식으로 발령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그 밖에 훈령의 형식으로 발령되는 행정규칙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임전결규정」</li> <li>■ 「사무분장규정」</li> <li>■ 「소속공무원 행동강령」</li> <li>■ 「소관사업 관리규정」</li> <li>■ 「자체감사규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규정」</li> <li>■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li> <li>■ 「성희롱예방규정」</li> <li>■ 「민원행정서비스 헌장」</li> <li>■ 「위원회·자료관·민원실·센터 등 운영규정 등」</li> </ul> |
|---|---|

행정규칙의 형식을 정한 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번호 부여 방식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다.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8조(법규문서 등의 번호)**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서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부여한다.

1.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법규문서에는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이하 “누년 일련번호”라 한다)를 부여한다.
2. 영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시문서 중 훈령 및 예규에는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명령에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매년 새로 시작되는 일련번호로서 연도표시가 없는 번호(이하 “연도별 일련번호”라 한다)를 부여하며, 지시에는 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이하 “연도표시 일련번호”라 한다)를 부여한다.
3.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공고문서에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나. 행정규칙의 제명(題名)

행정규칙의 제명은 규율하려는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용어 그리고 규율 내용 전체의 내용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또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

행정규칙의 제명에 반드시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다. 다만, 위에서 보는 것처럼 본문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함축하고 대표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되, 가능하다면 법령과 구분될 수 있게 하고 또한 행정규칙의 형식에 따른 분류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그 형식적 분류기준에 따라 제명의 맨 마지막에 해당 행정규칙의 이름을 붙이게 된다. 즉, 훈령의 제명은 「○○훈령」 또는 「...에 관한 훈령」으로 하고, 예규의 제명은 「○○예규」 또는 「○○에 관한 예규」로 하며, 고시의 제명은 「○○고시」 또는 「...에 관한 고시」로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행정규칙의 제명에 행정규칙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 「○○규정», 「○○규칙», 「○○세칙», 「○○지침», 「○○기준」 등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1

2

3

4

5

**행정규칙의 제명에 형식적 분류기준에 따른 명칭을 표현한 경우**

- 재외공관 주재관의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외교부훈령 제212호)
-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국방부예규 제642호)
-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5호)

**행정규칙의 제명을 형식적 분류기준과 관계없이 표현한 경우**

- 병무청 종합상황실 관리 운영규정(병무청훈령 제2135호)
- 회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41호)
- 시청각 기록물 관리지침(대검찰청예규 제695호)
- 사료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87호)
-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54호)
-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880호)

## 다. 제정·개정 선택

### 1) 구분 기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나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존에 있던 행정규칙의 내용을 개편하는 경우 개정 방식을 취할 것이다.

한편, 기존 행정규칙이 있더라도 기존 행정규칙의 규정 내용을 전면적으로 확대·개편하여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기존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것보다 새로운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폐지·제정 방식을 취한다.

### 2) 제정 시 기존 행정규칙의 폐지

기존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것보다 새로운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폐지·제정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행정규칙(B, 000훈령)을 제정하면서 기존 행정규칙(A, △△△훈령)을 폐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행정규칙의 폐지는 제정하는 행정규칙의 부칙에서 종전의 행정규칙을 폐지해야 한다.



○○○훈령안

**부 칙****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훈령을 폐지한다.**3) 폐지·제정 시 기존 행정규칙의 부칙**

개정되는 행정규칙의 부칙은 해당 행정규칙 제정 당시의 최초 부칙에 이어 그대로 존치되어 그 행정규칙의 개정 연혁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폐지·제정 또는 전부개정의 형식을 취할 경우 종전 부칙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종전 행정규칙의 부칙 중 새로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행정규칙을 시행한 후에도 이를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는 훈령·예규 등의 부칙에 규정하도록 한다.

**라. 특수한 개정****1) 행정규칙 제명 변경을 위한 개정**

행정규칙의 제명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된 행정규칙(B)이 기존 행정규칙(A)을 개정한 것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행정규칙(A)의 개정문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문에서 아래와 같이 제명이 변경됨을 명시한다.

**Ⅰ A지침(훈령 제70호)인 경우 개정문 작성례 Ⅰ****A지침 일부개정훈령안**

A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A”를 “B”로 한다.

제1조 중 “...”를 “...”로 한다.

1

2

3

4

5

## 2) 조직 개편으로 인한 행정규칙 정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행정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 「정부조직법」 부칙에서는 행정규칙 발령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행정규칙 발령의 주체를 “이관 전 부처장”에서 “이관 후 부처장”으로 변경하는 다른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경과조치를 통해서 이관 전 부처장이 발령한 행정규칙은 이관 후 부처장 소관으로 변경되게 된다.



### 정부조직법 부칙(예시)

**제3조(중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7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 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7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에 따라 행정규칙을 이관 받은 기관에서는 이관된 행정규칙에 대하여 기관 명칭 등 이관된 권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개정방식에 대해서 중전의 행정규칙을 이관 받은 기관에서 행정규칙 각각을 폐지한 후 제정하거나, 중전의 행정규칙 각각을 일부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개정 절차의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참고 행정규칙의 소관은 변경되었으나 변경사항이 없는 행정규칙의 개정

행정규칙의 소관은 변경되었으나, 부처 명칭 변경 등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이 없어 개정되지 않은 행정규칙의 경우 중전의 부처 명칭이 기재된 발령번호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발령번호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을 발령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생산할 때 부여하여 관리하는 일련번호임을 고려할 때, 행정규칙의 개정 없이 발령번호만을 변경할 수 없으며, 발령번호 또는 발령번호에 기재된 부처의 명칭은 그 자체가 행정규칙이 아니므로 개정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개정 내용 없이 부득이 행정규칙 발령번호에 기재된 부처의 명칭만을 변경하려면 중전의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변경된 부처명이 기재된 발령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Ⅰ 행정권한이 A에서 B로 이관된 경우 Ⅰ



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

제1조(--훈령의 개정)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조제0항 중 “A”를 “B”로 한다.

제2조(--훈령의 개정)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 중 “C”를 “D”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



○○○훈령 등 폐지훈령안

다음 각 호의 훈령을 각각 폐지한다

1. -----(A 훈령 제17호)
2. -----(A 훈령 제50호)
3. -----(A 훈령 제65호)

부 칙

이 훈령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3

4

일괄 개정이나 일괄 폐지를 할 때에는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시 등의 형식별로 일괄 개정, 일괄 폐지해야 하고, 형식이 다른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시 등을 하나의 훈령 등으로 일괄하여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아울러 일괄 개정, 일괄 폐지된 행정규칙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하고 사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에 일괄 개정, 일괄 폐지령만을 등재해서는 안 되고 일괄 개정, 일괄 폐지된 수개의 행정규칙 각각에 번호를 부여하여 그 각각을 별도로 등재 요청하여야 한다.

5

### 3) 공동고시의 개정 방식

법령에서 고시로 위임하는 사항이 둘 이상의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기관에서 공동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예: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또한, 집행상의 필요로 공동으로 고시를 발령해야 하는 경우에도 공동고시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공동고시는 관련되는 기관이 공동으로 관리하므로 이를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이 공동으로 개정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의 기관만이 단독으로 개정해서는 안 된다.

공동고시는 기관별로 고유의 번호로 발령번호를 부여한다고 해서 기관별로 별도의 고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고시로 존재한다. 따라서 공동고시의 소관 기관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추가되는 기관의 공동고시에 대한 제정형식의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이후의 개정 시 추가되는 기관의 발령번호만 부여하면 되며, 공동고시의 소관 기관 중 어느 기관이 없어질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공동고시를 폐지할 필요는 없고 그 이후부터의 해당 공동고시 개정 시 해당 기관의 발령번호를 삭제하면 된다.



#### 공동고시 제정·개정 시 유의사항

- (공동고시의 범위) 주관 부처에서 공동으로 등재하여 발령일자 및 조문의 내용이 동일해야 공동고시로 인정
- (입안·발령절차) 공동고시 소관 부처에서 협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행정규칙으로 입안·발령 절차 진행
- (사전 규제심사) 공동소관부처 전부가 아닌, 규제조문 담당부처만 사전 규제심사 요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재) 주관 부처에서 일괄 등재

### 4) 일몰제 제정·개정을 위한 일괄 개정 및 일괄 폐지

비슷한 시기에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여러 개의 행정규칙의 일몰 규정을 개정하거나, 여러 개의 행정규칙에 일몰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 방식으로 행정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 일몰제 설정을 위한 ○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

**제1조(○○○훈령의 개정)**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훈령의 개정)**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2

3



### 일몰제 개정을 위한 ○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

**제1조(○○○훈령의 개정)**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본문 중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를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중 “2024년 1월 1일”을 각각 “2028년 1월 1일”로 한다.

**제2조(○○○훈령의 개정)**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

5

존속기한이 도래한 행정규칙 중 그 규정 필요성이 사라져 폐지할 훈령·예규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일괄 폐지 방식으로 소관 훈령·예규 등을 폐지할 수 있다(폐지에 따른 경과규정이 필요하면 부칙에 일괄하여 규정).

일괄 개정이나 일괄 폐지를 할 때에는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시 등의 형식별로 일괄 개정, 일괄 폐지하여야 하고, 일괄 개정, 일괄 폐지된 행정규칙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하고 사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에 일괄 개정, 일괄 폐지령만을 등재해서는 안 되고 일괄 개정, 일괄 폐지된 수개의 행정규칙 각각을 별도로 등재 요청하여야 한다.



**○○○훈령 등 폐지훈령안**

다음 각 호의 훈령을 폐지한다.


1. -----(-훈령 제00호)
2. -----(-훈령 제00호)

**부      칙**

이 훈령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5) 부칙을 통한 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제정·개정되는 행정규칙의 부칙에서 그 행정규칙의 개정과 관련이 있는 다른 행정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부칙에서 다른 행정규칙(B)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내용은 다른 행정규칙(B)에 흡수되고, 부칙에서는 개정된 형식만 남게 된다.



**A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부      칙**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B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그런데, 행정규칙 부칙에서 다른 행정규칙(B)을 개정할 경우 다른 행정규칙(B)에 개정되는 내용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다른 행정규칙(B) 담당부서에서 개정되는 내용을 반영한 행정규칙의 등재를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별도로 요청하여야 한다.



# 4

## 주요 분야별 입안·심사 세부 기준

1. 총칙
2. 주제별 입안·심사 기준

### 1. 총칙

법령의 일반적 체계를 보면 대부분 처음에 그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실체 규정, 보칙 규정, 별칙 규정을 두며, 마지막 부분에 부칙 규정을 둔다. 이와 같이 총칙 규정은 법령의 앞부분에 위치하여 그 법령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적인 사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규칙의 경우에도 총칙에 해당하는 목적 규정, 정의 규정, 해석 규정, 적용 범위 규정 등을 규정할 수 있다.

#### 가. 목적 규정

목적 규정에서는 법령에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지 여부와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령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최대한 관계되는 법령의 규정을 명시하되, 관련 법령 규정을 전혀 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정과 규정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예 시**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경우 목적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예규/고시)은 「○○법」 제○○조, 같은 법 시행령 제○○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에서 ○○○장관(○○○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절차, 지침과 절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령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 규정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명시

**예 시** 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발령되는 목적 조항

**제1조(목적)** 이 훈령(예규/고시)은 -----하기 위하여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령에 명시적 위임은 없지만 법령의 시행을 위한 경우 어떤 법령과 관계되는지 파악하기 쉽도록 해당 법령 제명을 명시

**나. 정의 규정**

행정규칙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을 둘 수 있으나, 법령에 정의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중복하여 정의 규정을 두지 않는다. 법령의 정의 규정과 행정규칙의 정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의 규정을 사용하여 제정된 실체 규정의 적용 범위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면 약칭(略稱)은 반복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으로서 정의규정이 아니므로 법령에 약칭이 있어도 행정규칙에서 필요한 경우 약칭을 할 수 있다.

**다. 본칙의 구성**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행정규칙은 조문형식으로 입안하는 경우 법령의 규정 순서에 따라 조문내용을 구성하고, 장이나 절을 구분할 때에도 법령의 위임 조항과 같은 제목의 장 제목을 사용하도록 하되, 같은 조문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이나 논리적 순서에 따라 규정한다.

1

2

3

4

5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므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지 아니하나,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해당 내용을 규정하면서 집행의 편의를 위해 행정규칙에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언급할 경우 법령에 기재된 내용을 중복하여 기재하지 말고 상위법령을 따른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규칙이 상위법령의 개정을 따라가지 못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권이 보장되므로 조례의 제정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으로 조례로 정할 사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자치입법권의 보장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지방자치법」 제28조제2항).

### 관련사례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행정예고안

※ 2025. 10. 2. 국토교통부훈령 제1901호 개정에 관한 행정예고안

상위법령에서는 광역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행정예고안에서는 훈령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매체 외에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여 규정

☞ 조례로 정할 사항에 대한 지침을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자치입법권을 저해하여 부적절하다는 법제처 사전검토 의견에 따라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부분을 삭제 후 발령

## 2. 주제별 입안·심사 기준

### 가. 인·허가 및 신고

#### 1) 최초 인·허가 의무 부과 규정

국민이 어떠한 행위를 할 경우 행정청의 허가나 승인을 받게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게 하는 등 법령에서 예상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령에서 승인 등을 받도록 하고 있는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해야 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 없다.

#### 관련사례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 2008. 2. 2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상위법령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정한 세부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 기준에서는 모법의 근거 없이 세부기준에 대한 사전승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하위법령에 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관련사례

#####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 2016. 12. 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상위법령에서는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면제할 수 있는 용품의 유형을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에서는 제작자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과 이미 제작자승인을 받은 다른 철도용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작자승인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과 상충됨

1

2

3

4

5

관련사례

상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 2015. 1. 2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으로 근거 마련

상위법령에서는 조합 또는 중앙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고시에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어 문제가 됨

인증의 유형은 법적 인증과 민간인증(법적 근거 유무)이 있고, 법적 인증은 다시 의무인증과 임의인증(강제성 유무)으로 나뉘는데, 의무인증 제도를 두려면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

관련사례

인증 제도 사례

■ 법령에 선택사항으로 규정된 인증제도 사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성능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품인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유기식품등의 인증

■ 법령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인증제도 사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안전인증

관련사례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행정안전부고시)

※ 2011. 8. 8.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상위법령에서는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경력, 학력)을 갖추고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고시에서 소방방재청장은 손해평가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여 있음. 손해평가인증은 손해평가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이는 대국민 공신력과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손해평가인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법령이

아닌 고시에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인증에 관한 사항을 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격요건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손해평가인증의 서식 규정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 관련사례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특허청고시)

※ 2024. 8. 7. 특허청고시 제2024-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상위법령에서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신청, 선정 기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시 민간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선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고시에서는 직무발명 우수기업의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인증이란 공적 기관에서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 업무처리 방식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증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증사항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인증을 통해 일정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선정”을 “인증”으로 보기는 어렵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근거를 상위법령에 직접 규정하거나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원 육성의 성격을 가진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지정 및 지정취소제도는 지정 제도의 본질적인 사항이자 국민의 기본권 행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 법령에 근거가 필요하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서 지정제도의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는다.

## 2) 요건 규정

인·허가나 특허의 경우, 그로 인해 자연적 자유권이 회복되거나, 상대방에게 권리·능력 기타 법률상 힘이 발생되므로 그 요건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 등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더라도 그 실질 내용이 완화된 인·허가 제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규칙에서 모법의 위임 없이 허가 등의 사유를 추가하거나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상충되는 기준을 정해서는 안 된다.

1

2

3

4

5

관련사례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2015. 9. 11.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근거 마련  
(現) 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상위법령에서는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하고, 고시로 등록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전송망사업 등록은 그 성질이 장부 등재와 같은 강화상 등록이 아니라, '금지-예외'의 구조를 갖는 완화된 인·허가 제도의 성격을 가지며, 이러한 등록의 요건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관련사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2014. 11. 13.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79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고시

상위법령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고시로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 고시로 등록요건(자본금요건)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요건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요건으로 국민의 직업의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써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임.

관련사례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상위법령에서는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요건으로 시설요건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은 시설요건의 충족 여부 외에 폐기물의 적정한 재활용 및 처리용량 달성을 위한 시설 운전방안, 발생 폐기물의 처리방안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음.

### 관련사례

#### 수산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2016. 3. 1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現) 수산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상위법령에서는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시설 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고시에서는 지원장이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검역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교육의무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바, 교육의무 부과 시설 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 관련사례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상위법령에서는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보세판매장에 대해서만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세공장의 특허 갱신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고시로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 보세공장의 특허기간을 갱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근거나 위임 없이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서류를 행정규칙에서 추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법령에 서류 서식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행정규칙에서 이를 중복하여 기재하기보다는 상위법령에 따른다고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관련사례

####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 2018. 6. 1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상위법령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을 위해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타이어제작자가 자체 측정승인 신청시에 신청서와 함께 시험설비 현황, 전문인력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시에서 시험기관과 상관성시험 실시결과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반함.

1

2

3

4

5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지정제도의 경우에도 지정대상 범위와 기준을 상위법령에 규정하거나, 명시적으로 지정대상 범위를 행정규칙으로 위임해야 한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지정 및 비용 지원 규정을 두고 세부사항을 위임하였다면 법규명령에 의한 위임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기술적 사항과 관련하여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관련사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 2014. 11.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근거 마련

상위법령에서는 중소기업 등이 생산한 물품 중 성능, 기술, 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시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일정 제품에 대해서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범위를 제한함.

**관련사례**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폐지)**

상위법령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 고시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신고대상 업종을 제한함.

**3) 인·허가 결격사유 규정**

국민이 어떤 행위를 할 경우 행정청의 허가나 승인을 받게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게 하는 경우, 그 결격사유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16조).

**관련사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 2010. 2. 10. 관세청고시 제2010-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상위법령에서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특허를 받도록 하면서, 특허신청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고시에서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의 결격사유를 법령과 달리 확장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음.

### 관련사례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 2022. 8. 30. 특허청고시 제2022-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고시에서는 공익변리사로 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결격사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는 법령의 위임도 없고, 「변리사법」에 규정된 변리사의 결격사유와도 다른 내용을 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특히, 인·허가 취소 후 일정 기간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규정은 인·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관련사례

#### 상표·디자인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특허청고시)

※ 2008. 6. 12. 특허청고시 제2008-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現)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상위법령에서는 상표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고시에서 지정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지정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법인에 대하여는 당분간 지정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는 있으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사례

####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 2015. 7. 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상위법령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고시에서는 위탁교육기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등록 제외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대상기관에 해당함에도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될 수 없도록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가 아니라 법령에서 직접 규정할 사항임.

1

2

3

4

5

#### 4) 인·허가 유효기간 규정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은 인·허가를 신청한 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 관련사례

######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 2015. 7. 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상위법령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고시에서는 위탁교육기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등록 제외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대상기관에 해당함에도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될 수 없도록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가 아니라 법령에서 직접 규정할 사항임.

##### 관련사례

######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폐지)

상위법령에서는 설비인증기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비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설비인증을 하고, 구체적인 설비인증의 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인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고시로 인증의 유효기간을 정함. 그런데, 설비인증의 유효기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민이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법률에서 인증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증 유효기간은 법률에서 정하여야 함.

#### 5) 변경신고, 휴업·폐업신고 의무 부과 규정

최초에 인·허가 등을 받도록 하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령에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 변경 인·허가, 변경신고 등의 의무 규정을 부여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 법률에서 등록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등록 등의 변경 또는 취소를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 등의 변경 또는 취소는 상대방에게 큰 불이익을 줄 수 있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법률에 등록의 요건을 정하면서 등록 변경 또는 취소의 요건도 함께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등록 변경 또는 취소의 요건에 관한 규정이 별도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 관련사례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 2015. 7. 1. 관세청고시 제201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상위법령에서는 특허를 받은 자의 해산·사망으로 그 상속인과 승계법인이 특허보세구역을 계속 운영 하려면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고시에서는 상속인이나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경우 승계신고 시에 법인 상호 변경, 대표이사나 임원 변경이 있으면 별도로 특허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승계신고와는 별개로 상위법령에 없는 별도의 특허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이러한 변경신고 의무에 관하여 관세법령에 그 근거가 없는바, 필요시에는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사항의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관련사례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상위법령에서는 교육기관의 변경 지정 및 폐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교육기관이 지정 내용 변경 및 교육기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관련 서류의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음.

휴업·폐업을 한 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이는 조세나 부담금을 포함한 각종 법률 관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실의 통지를 넘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 관련사례

####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9. 8. 27. 수의사법 일부개정으로 근거 마련

상위법령에서는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지정절차 및 지정 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인데, 고시에서 지정된 검사·측정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검사·측정기관에 휴업·폐업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1

2

3

4

5

## 6) 인·허가 취소사유 규정

인·허가 등 취소 사유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정하여야 한다.

### 관련사례

####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 2016. 3. 2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근거 마련

상위법령에서는 청정연료 사용 대상 시설에서 제외 승인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 고시에서는 위 승인을 받은 자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필수적으로 그 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승인 취소는 승인을 받은 기관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위법령에서 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관련사례

####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법무부예규)

※ 2014. 11. 28. 법무부예규 제1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상위법령에는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예규에 따른 등록취소는 법률에 근거 없이 법률구조법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처분임.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취소는 행정행위 철회의 법리에 따라 근거를 찾을 수도 있겠으나, 그 외의 경우는(특히 보고의무 불이행 등)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적법한 처분이 될 것임.

### 관련사례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외에 지정취소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음. 지정 취소는 해당 교육기관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 1) 행정처분의 근거

업무정지, 영업정지, 지정 취소 등은 공권력적인 행정제재 처분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행정작용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고,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주체, 객체, 요건 등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임의 범위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 관련사례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선행기술조사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 2016. 2. 29. 특허법 일부개정으로 근거 마련  
(現)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에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지정기준 및 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데, 고시 제20조에서는 보안규정 위반 등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제3항)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근거 없이 지정취소를 정하는 문제가 있음.

지정취소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법률에서 그 근거를 두어야 하고, 법률에 지정 근거만 있고 지정취소의 근거가 없는 경우 행정규칙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관련사례

#####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국토교통부고시)

※ 2017. 9.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항공법」 제1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항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등을 확보한 경우, 신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고 지정받은 경우에는 증명이나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 지정의 취소는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권리를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이 고시 제10조는 「항공법」상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없이 지정취소를 정하는 문제가 있음.

1

2

3

4

5

### 관련사례

####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바이오디젤연료유의 보급사업에 대한 지정판매자 및 지정사업자를 선정하고, 보급대상 차량을 정하며, 지정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보급사업과 관련된 지정이나 지정의 취소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위 부분에 대한 근거를 모법에 두거나 그 밖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2) 행정처분의 기준

시정명령 및 개선명령은 행정법령의 위반행위로 초래된 위법상태의 제거 또는 시정을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시정명령의 법적 성질은 작위, 부작위, 급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명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 기준을 정하려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관련사례

####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교육부고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카목1)에서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입학할 허가한 경우에는 초과 모집인원의 2배(2차 위반 시 3배)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고시는 초과모집에 따른 시정·변경명령 기준을 규정하면서, 그 내용으로 대학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의 경우에는 초과모집 인원만큼 차차년도 해당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감축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합격선 동점자 발생, 지원자 과실, 타기관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의 경우에는 초과모집 인원만큼 차차년도 해당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감축을 하도록 하며(제5조), 또한 초과모집이 과도한 경우에는 합격선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초과모집 금지, 기관 주의 등 부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제6조)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규정하는 문제가 있음.

## 관련사례

###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5. 11. 20.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5-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이 고시 제17조에서는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업무정지, 개선명령 등의 내용을 정하면서 제17조제1항제3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측정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서는 검사·측정기관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3) 행정제재 처분의 사유 추가·변경

모법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서 개발사업 참여의 제한, 시정명령, 시설 사용금지·폐쇄 등을 규정할 수 없으며 모법에서 정한 행정제재 처분의 사유와 상충되는 사유를 정하거나, 모법의 위임 없이 행정제재 처분의 새로운 사유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취소 규정과 달리 행정규칙에서 지정취소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의 문제가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발생하면 이는 법령 개정을 통해 법령에 규정하여야 한다.

## 관련사례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예규)

※ 2024. 4. 30. 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제2항은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예술인 대상의 복지 지원 등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예규에서는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거짓된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침익적인 규정은 법령에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2

3

4

5

## 관련사례

##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지원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 2013. 7. 31. 중소기업청고시 제2013-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이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끝낼 수 있는 사유로서 3개의 사유(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업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3.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협업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나, 고시 제23조제1항에서는 협업사업계획의 승인 취소사유를 법률에서 정한 사항보다 넓게 규정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취소사유를 추가한 문제가 있음.

## 4) 새로운 행정제재 처분

영업활동의 일정기간 참여를 제한하거나 지정취소 후 재지정을 제한하는 등 국민의 영업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그 근거가 필요하다.

## 관련사례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 2016. 3. 29. 중소기업청고시 제2016-22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고시

주관기관 및 사업자의 사업이 취소, 해약, 부진사업으로 판정되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법률에 근거를 필요로 하며, 또한 일정기간이란 용어는 매우 주관적이고 모호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

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의 행정적 제재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더라도 국민의 영업활동 및 권익을 제한하는 업무정지 사유를 정하거나 계약위반에 대한 거래정지 처분을 정하는 것은 사업 참여 제한 조치와는 다르므로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 관련사례

###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폐지)

이 공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향후 종합쇼핑몰(전자조달시스템)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 및 효력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거래정지 처분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의 전체 또는 계약의 일부 품목, 품명 등에 대한 거래를 일정기간 제한하고, 거래정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이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제한과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인바, 계약상대자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고 해당 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필요시에는 행정규칙이 아니라 상위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할 사항임.

## 5)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가중 등

행정처분의 가중·감경에 관한 기준은 처분의 구체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서 제재처분의 기준을 신설하거나, 그 가중·감경 요건을 변경할 수 없다.

## 관련사례

###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국세청훈령-실효)

이 훈령 제10조제7항에서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8조제2항의 과태료 관련 명령 위반자 중 연간 수입금액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명령위반의 정황 상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양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 공평과세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법인 및 제조·도매·광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령에 따른 과태료 감경 외에 개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함께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여야 함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에서 해당 사항을 정하지 않고 이 훈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대통령령에서 과태료 감경에 관한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1

2

3

4

5

## 6) 행정처분의 취소

처분청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는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 다만, 이를 명문화하려면 직권 취소는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는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행정규칙으로 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관련사례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용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 2022. 1.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으로 근거 마련

사업주에 대한 부당 용자 또는 지원에 대해서는 용자 또는 지원금에 대한 징수 및 지원 제한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장애인에 대한 용자 또는 지원에 대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근거가 없음. 지원결정취소 및 지원금 반환 등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지원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업주에 대한 지원취소결정과의 균형을 위해 향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지정이나 지정취소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령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고, 행정규칙으로 지정취소 요건을 정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서 별도의 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관련사례

##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국토교통부고시)

※ 2017. 9.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항공법」 제1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항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등을 확보한 경우, 신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전문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고, 지정받은 경우에는 증명이나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 지정의 취소는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권리를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행정규칙에 근거를 둘 수는 없음.

## 관련사례

###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바이오디젤연료유의 보급사업에 대한 지정판매자 및 지정사업자를 선정하고, 보급대상 차량을 정하며, 지정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보급사업과 관련된 지정이나 지정의 취소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위 부분에 대한 근거를 모법에 두거나 그 밖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다. 과징금·과태료 등

### 1) 과징금·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의 부과처분은 금전적 제재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행정기본법」 제3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6조).

### 2) 과징금·과태료 부과 기준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과징금 등의 부과기준을 행정규칙에 위임할 경우에도 모법에서 부과 근거와 가중 사유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한 후 세부적인 기준 등을 위임하도록 한다.

## 관련사례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훈령-폐지)

이 훈령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별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부과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1

2

3

4

5

행정규칙에서 과징금 등의 부과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모법의 위임 범위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모법에서 정한 내용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 관련사례

####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실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7개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괄적으로 하나의 예규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기준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국민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과징금·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28조제1항).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의 부과·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 상한금액 및 부과권자는 법률에서 정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훈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도록 한다.

### 관련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관련사례

##### 어선법 사무취급요령(해양수산부예규)

※ 2020. 5. 27. 해양수산부예규 제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이 예규 제35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의 처분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규정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 예규에서 이의제기 기한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과 달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여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음.

과태료 부과권자, 부과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정해야 하고, 세부사항을 행정규칙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부합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 관련사례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훈령·폐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통신 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대외적인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 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이 훈령에서는 법령과 달리 관할 전파관리소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음.

#### 4) 금전적 제재처분에 대한 가중·감경 요건

금전적 제재처분에 대한 가중·감경 요건은 국민에게 금전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므로 법령에 따른 근거가 필요하다.

1

2

3

4

5

## 관련사례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 2019. 2. 12.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근거 마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자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세관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훈령에서는 「관세법」 제277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집행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과태료 감경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관세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자,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과태료 감경 대상으로 추가함.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둔 경우 과태료 감경 대상은 법령에서 함께 규정할 사항으로, 법령에서 감경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대상을 이 고시에서 과태료 감경 대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필요함.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으로 과징금 산정 절차를 정하는 경우, 법령과 달리 과징금 부과 시 참작사유를 정하거나 추가하지 않도록 한다.

## 관련사례

###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 2016. 6.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하는 사유에 대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 고시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등 위반행위와 상관없이 위반행위 종료 후 조사과정에서의 조사 거부 등과 같은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서 과징금 부과 시 참작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이 고시에서 과징금 가산사유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음.

### 5) 벌금(행정형벌)과 과태료(행정질서벌)의 병과

입법자는 행위의 법익침해의 정도가 강하여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 행정형벌로 규정할 것이고, 미약하다면 행정질서벌로 규정할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면서 행정질서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입법자가 하나의 행위가 갖는 여러 의미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병과(併科)할 수도 있다.

#### 관련사례

#####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보건복지부고시)

※ 2012. 12.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약사법」에서는 약국등의 개설자의 가격 표시 의무 부여와 그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고시에서는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른 벌칙과 이 고시에 따른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는 것으로서 「약사법」에 맞지 않고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함.

#### 관련사례

#####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2020. 2. 2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의약품외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가격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고시에서는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화장품법」에 따른 벌칙과 이 고시에 따른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는 것으로서 「화장품법」에 맞지 않고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함.

1

2

3

4

5

## 라. 수수료·사용료·부담금 등

### 1) 개관

수수료와 사용료는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받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를 말하고, 부담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규율된다.

### 2) 수수료·사용료의 부과

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행정기본법」 제35조제1항),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관련사례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 2023. 7.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고시 제16조에서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수수료”라 함)을 징수할 수 있고, 수수료 징수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수수료 증감 사유 발생 시 수수료 재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음.

### 3) 수수료 부과·징수 절차

#### 가) 업무 대행·위탁 시 주의사항

국가 등이 그 사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에 관한 수수료 징수업무도 함께 위탁하거나, 수수료 부과 규정에서 수탁기관에 수수료를 내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관련사례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범위(해양경찰청고시)

※ 2017. 4. 1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근거 마련  
(現)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령에서 장관은 연안체험활동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교육 실시업무를 학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시에서는 안전교육 수수료를 정하면서 이를 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안전교육 미 이행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안전교육은 의무사항으로 수수료 부과 근거가 법령이 명시되어야 하고, 수탁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명시하여야 함.

#### 나) 미납 시 조치

수수료 미납을 행정제재 요건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행정제재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관련사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조달청고시)

※ 2014. 6. 18. 조달청고시 제2014-14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고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이용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고시에서 이용수수료를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제한은 권리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법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함.

## 4) 부담금 부과 요건 및 징수절차

### 가) 포괄재위임 금지

부담금은 재정조달 대상이 일반국민이 아니라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세법률주의’와 유사하게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거나 적어도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1

2

3

4

5

## 관련법령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 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 부과 원칙)** ① ~ ④ (생략)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①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 나) 부담금 납부기한 전 징수 및 징수유예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경우도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바368),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가산금, 징수유예, 결손처분 등은 법령에 직접 규정할 사항이고 행정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다.

## 관련사례

##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 2013. 8.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근거 마련

부담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필요함.

행정청의 편의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어느 정도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과절차를 가능하면 법률에서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행정규칙으로 정하지 않도록 한다.

## 5) 납부의무의 면제 및 승계

### 가) 부담금 납부의무 면제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법령에 정해야 하고 모법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규정해서는 안 된다.

#### 관련사례

#####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 2013. 8.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근거 마련

폐기물부담금 산정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부담금 면제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필요함.

### 나) 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합병·상속의 경우 일체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므로 사업자로서의 지위 및 그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도 승계되나, 「민법」, 「상법」의 규정과 달리 납부의무를 연대납부의무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4조와 같이 별도로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관련사례

#####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 2013. 8.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근거 마련

예규에서 법인의 합병·상속으로 인한 부담금 납부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상속분에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어, 연대납부의무는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예규에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1

2

3

4

5

## 마. 각종 지원·보상의 제한

### 1) 개관

상위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행정규칙에서 지원·보상 대상을 제한하거나 의무사항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2) 지원·보상 대상의 제한

법령에서 지원·보상에 관한 기본적 사항만을 두고 있는 경우, 행정규칙에서 지원 보상 대상 등을 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제한해서는 안 된다.

#### 관련사례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 2010. 9. 1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근거 마련  
(現)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는 장애인 보장구의 보험급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법률의 위임 취지에 비추어 적어도 법령에서 직접 정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보장구의 범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이 아니라 이 고시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한 보장구 등 일정한 보장구로 제한하는 것은 고시로 장애인에게 법령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음.

#### 관련사례

#####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 2010. 1. 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現)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상위법령에서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 사유를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 “그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제한사유로 정한 것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임범위 이탈의 문제가 있음.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위임의 범위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 3) 지원·보상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범위 확대

상위법령에 규정된 의무부과 대상자 또는 행정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정의·해석규정을 두면서 법령에 규정된 요건이 아닌 사항을 추가하거나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 관련사례

#####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장려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 2009. 5. 28. 고용노동부예규 제586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예규  
(現)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법률에서는 부정수급행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나 고용노동부 의견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예규에서는 부정수급행위를 설명하는 규정으로 “법을 알지 못하고 부정수급행위를 한 경우 등도 부정수급행위로 본다.”고 함으로써 법을 알지 못하고 부정수급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예규로 획일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바. 보고·신고·자료제출 등

### 1) 개관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서 국민에게 신고 및 확인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고 사항을 행정규칙에서 추가로 규정하거나, 국민이나 관련 사업자 등에게 특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 법인 등이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단체 등에 일정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신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있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을 받아 하위법령에 규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에서 행정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한 때에만 행정규칙에 규정할 수 있다.

1

2

3

4

5

또한, 법령에서 정한 보고·신고 사항 등을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서 추가하여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

### 관련사례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고시에서는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수료증을 교부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부 후 14일 이내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수료생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근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음.

## 2)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지만 행정조사의 수권규범은 아니기 때문에 출입검사 등 강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 근거법령

####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자료제출 요구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및 자료의 범위는 법령에서 특정되어야 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서 이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 근거법령

##### 행정조사기본법

#### 제10조(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제출기간
2. 제출요청사유
3. 제출서류
4.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5.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관련사례

#####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 2013. 7. 1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이 고시 제14조제2항은 「에너지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대상자를 정하고 있는데, 모법에 에너지총조사의 조사대상 범위를 정한 규정이 없고 다른 법령에서 정한 에너지통계의 내용 및 조사대상자의 범위도 알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이 고시 제14조제2항은 조사대상자의 범위가 전혀 특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1

2

3

4

5

#### 4) 출석·진술 요구

조사대상자에 대한 의무적 출석·진술 요구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법률에 그 근거가 필요하다.

#### 근거법령

####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출석·진술 요구)** ①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출석·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출석요구의 취지
3.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4. 제출자료
5.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략)

③ 출석한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원은 조사대상자의 1회 출석으로 당해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 ② 조사대상자는 법률·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관련사례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방송통신위원회훈령)

※ 2010. 3. 22.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으로 근거 마련  
(現)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규정된 금지 행위 규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어 법령상 근거가 필요함.

## 5)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의무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법령의 위임에 따라 보고를 명하는 경우 보고받는 주체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행정기관으로 해야 한다.

### 관련사례

#### 수산동물 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폐지)

고시에서 법적근거 없이 업무정지 외에 방역교육이라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수산동물 운송업자에게 6개월 이내에 방역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바, 법령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음.

### 관련사례

####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훈령)

※ 2009. 8. 5. 방위사업청훈령 제1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훈령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기술보유기관은 이전된 기술의 민수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그 결과를 획득기획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술보유기관에 대하여 국방과학기술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법령의 근거를 두는 경우에도 그 보고는 획득기획국장이 아닌 행정기관으로 해야 함.

1

2

3

4

5

## 사. 공동이용 행정정보

### 1) 개관

허가 등 각종 신청 시 첨부서류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민원인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불편을 줄이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상호 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제출 요구 가능)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칙에서도 전자정부법령<sup>7)</sup>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 관련법령

#####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③ 행정기관등은 상호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 통계정보, 문헌정보, 정책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3. 행정기관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범위에서 대상정보의 종류, 범위 및 유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정안전부고시 제2024-94호) 참조.

##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허가 등 각종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가 전자정부법령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인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도록 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공시성 행정정보<sup>8)</sup>(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에 대한 동의나 사본의 제출은 불필요하다.

### 관련사례

####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방위사업청예규)

※ 2022. 12. 12. 방위사업청예규 제8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예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는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정안전부고시 제2020- 7호)에서 각각 국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보보유기관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예규에서는 보훈·복지단체가 수의계약요청서를 제출할 때 수의계약 자격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한바,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민원인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음.

## 아. 권한의 위임·위탁

### 1) 위임·위탁의 근거 규정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데, 법령에서 위임·위탁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서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특정한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것으로서 「정부조직법」 제6조와 관련 법률에 위반된다.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22호) 제28조제2항에서는 공시성 행정정보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및 임야도, 건축물대장 등을 정하고 있다.

## 관련법령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권한과 위탁하는 업무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관련사례

##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

※ 2016. 10. 21. 법무부예규 제11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예규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귀화를 허가함. 그런데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이 예규 제4조제1항에서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심사업무 일부를 사무소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귀화허가 신청서를 사무소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한바,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한 문제가 있음.

## 관련사례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 2014. 11.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근거 마련  
(現)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수제품 신청을 조달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시 제4조제1항은 사단법인 정부조달우수제품 협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조달청장의

업무를 특정 단체에게 행정권한을 위탁하고, 조달청장이 받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를 협회가 받도록 한바,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한 문제가 있음.

## 관련사례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 2021. 4. 6. 중소기업부고시 제2021-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이 고시에 따른 전담기관은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가 중소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상생협력 지원 관련 신청 및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회사가 고시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청기업 등에 대한 선정 취소까지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별 법령에 권한의 위임·위탁의 근거가 없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별도의 권한의 위임·위탁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 발급
2. 영 제5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 목적이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등 도박의 사회적 부작용 해소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위탁한다.

1

2

3

4

5

### 3) 재위임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으므로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으로 재위임 근거 규정을 둘 수 없다.

#### 관련법령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입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관련사례

#####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2013. 1. 4.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훈령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 관리업무를 기금취급금융기관이나 전문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따라 위탁된 업무를 법령에 근거 없이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음.

#### 4)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행정업무를 민간의 법인이나 개인에게 맡기기 위하여는 법령에 위탁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민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술적인 사무로 한정된다.

##### 근거법령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관련사례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국토교통부고시)

※ 2022. 5.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업체의 지정취소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지정 취소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문제가 있음.

1

2

3

4

5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행정의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행정기관이 수행하기 보다는 민간에서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분야까지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그것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즉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있는 업무는 가급적 민간에 위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5) 조례로의 위임 시 유의사항

조례로 정할 사항의 위임 근거를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두는 것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권한의 분배를 행정규칙에서 변경할 소지가 있으므로, 행정규칙에서 법령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2항에서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관련사례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 2024. 12. 31. 국토교통부훈령 제2024-9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하고 있는 고시에서, 설계도서의 하나인 구조계산서의 작성 대상 건축물을 3층 이상으로 하면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시에서 조례로 위임을 하고 있어 부적절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자치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관련사례

#####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 2017. 12. 19. 국토교통부훈령 제9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국토계획법」 제44조의3제3항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는 공동구 점·사용료 결정시 적용기준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법령상 근거 없이 공동구 점·사용료에 관한 자치입법권을 저해하는 내용으로 부적절함.

##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관련 유의사항

일부 사업을 위임·위탁하면서,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한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1

2

3

4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생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 ⑤ (생략)

## 자. 위원회

### 1) 위원회의 설치근거

#### 가) 법령에 설치근거를 두어야 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국가의 의사이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행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법률에 그 설치근거를 두어야 한다.

행정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므로, 위원회의 운영방식과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 관련법령

##### 정부조직법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나) 훈령에 설치근거를 둘 수 있는 경우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는 의결에 기속력이 있는 위원회와 의결에 기속력이 없는 위원회로 나뉜다. 의결에 기속력이 있는 위원회는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도록 하고, 의결에 기속력이 없는 자문위원회는 법령 또는 훈령에 설치근거를 둘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위원회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 2) 위원의 임기

### 가) 위원의 임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법령에서 규정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정해야 한다. 법령에서 정하는 위원의 임기를 행정규칙에서 임의로 축소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관련법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 5. (생략)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보궐위원 임기의 제한

법령에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를 달리 규정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규정을

1

2

3

4

5

두어야 하고,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에도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제한하는 규정 자체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관련사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훈령)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보궐위원의 임기도 2년임에도 불구하고 훈령에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반함.

### 3)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법령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는 법령에서 규정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는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위임한 행정규칙에 이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

### 근거법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

## 관련사례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방송통신위원회규칙)

※ 2016. 1. 27. 방송법 일부개정으로 근거 마련

「방송법」에서 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해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 구성, 위원장 지명 및 위원 위촉,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규정하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방송사업자 등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칙 제9조의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사유는 상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4) 위원의 해임·해촉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4호에서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것과 달리 위원의 해촉 사유를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원칙적으로 해촉 사유란 법령에서 보장된 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 전 위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법령에서 해촉 사유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근거법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③ (생략)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2

3

4

5

**관련사례**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 2017. 1.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근거 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안전기준심의회 구성, 임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음. 위원의 해촉 사유는 위원의 신분과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적어도 법령에서 그 위임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5) 위원회의 운영**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법령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규정해야 한다.

**근거법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생략)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거법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생략)

- ②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위원회의 소속
- 2.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 및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법령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해야 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본위원회에 속하는 의결권한을 행정규칙에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을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려면 본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있는 법령에서 규정해야 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

### 근거법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생략)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근거법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생략)

- ②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서면 회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사유를 서면심의 사유로 규정하려면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 근거법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1

2

3

4

5

## 관련사례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 2009. 12. 22. 행정안전부훈령 제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훈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심의회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이므로 위와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인바, 훈령에서 “부득이한 이유”가 있으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것은 시행령보다 위원의 출석 면제사유를 확장하여 심의회의 운영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음.

## 차. 지방자치제도

### 1) 자치입법권의 보장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의 사무를 자기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아래 집행한다는 자치분권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과 자치분권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 그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배분한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 자율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규칙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정해서는 안 된다.

## 관련사례

###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고시)

상위법령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 일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칙으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 2) 사무수행의 독립성·자율성 실질적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보다 대등하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대해 국가가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의 독립성·자율성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또는 협의(동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두지 않고, 필요시 사후 통보 또는 의견 제출 요청 등으로 규정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필요시 사무의 집행 결과만을 알리는 사후 통보 또는 자료 제출 등으로 규정한다.

### 관련사례

####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 2025. 2. 27. 환경부고시 제2025-제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고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할구역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보증금 표시 적정 여부를 표본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률상 부여된 조사·검사 권한 행사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 관련사례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

상위법령의 내용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있어 동등한 관리주체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낙찰차액 감액 조정 시 그 변경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방분권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1

2

3

4

5

### 카. 차별적·권위적 용어

성차별적인 용어, 특정 직업에 부정적 느낌을 갖게 하는 용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어감이 있는 용어 등 특정 집단이나 계층,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나 고정 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용어는 순화된 표현으로 바꾸어 쓴다.

행정기관이나 특정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어감을 내포하고 있는 관(官) 중심의 표현은 쓰지 않도록 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적인 용어, 권위적인 용어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맞는 표현으로 바꾸어 쓴다.

#### 정비예시

##### 차별적·권위적 용어 정비 예시

- 혼혈아 ⇨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 불구자 ⇨ (신체)장애인
- 농아자 ⇨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간질 ⇨ 뇌전증
- 맹인 ⇨ 시각 장애인
- 시달 ⇨ 지시, 전달, 통보
- 징구하다 ⇨ 내게 하다, 받다
- 처하다 ⇨ 부과하다

### 타. 부칙

#### 1) 시행일을 정하는 경우

훈령·예규·고시 등의 시행일은 해당 행정규칙이 효력을 발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시행일을 정하는 방식에는 특정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과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

**사 례**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예규/고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

시행일은 발령일 이후에 오도록 규정해야 한다. 특히, 법령의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의 상위 법령이 행정규칙의 발령일 전에 시행되었을지라도 상위 법령의 시행일에 행정규칙의 시행일을 맞추면 안 된다. 행정규칙의 시행일은 해당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이 되며,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공고문서의 경우 그 고시나 공고가 있는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규칙의 시행일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규칙의 부칙에 시행일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적용례**

행정규칙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시행”이라고 한다. 제정 또는 개정된 행정규칙은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단순히 시행일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행정규칙의 적용대상과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규칙의 부칙에서 새로 시행되는 규정의 구체적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일 규정 외에 필요한 규정을 두게 되는데, 이를 “적용례”라고 한다. 이하 적용례 및 경과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참고한다.

**사 례**

**제2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부담금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대리인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발령 이후 ○○사실인정신청 또는 사실확인신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2

3

4

5

#### 4) 경과조치

행정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행정규칙을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기득권을 침해함으로써 위헌 또는 위법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부드럽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도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생기는데, 이러한 과도적 조치를 경과조치라고 부른다.

경과조치는 신규 양 법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신규 행정규칙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행정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각 조문별로 법적 안정성의 확보 등을 위해 어떤 과도적 조치가 필요한지를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법령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된 경우에 개정법령 부칙에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신법인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행위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제재처분 기준의 적용 원인이나 전제가 되는 의무 규정이나 지원 규정 등의 개정으로 개정법령 전의 위반행위가 더 이상 위반행위가 아니게 된 경우 개정법령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 규정의 적용으로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와 달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처분을 행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행정규칙의 부칙에 의무 규정이나 지원 규정 등의 위반과 관련된 제재처분 가능 여부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확하게 두어야 한다.

#### 사 례

**제3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제0조제0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영) 제×조제×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파. 약칭과 준용

### 1) 약칭

#### 가) 약칭의 의의

‘약칭’이란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법령 조항의 복잡한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약칭을 사용하면 입법을 할 때에 다소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나 일반국민에게는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점도 있다. 익숙하지 않은 약칭은 그 약칭한 조항을 찾아가서 정식 용어를 확인해야 비로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칭은 정의 규정과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정의 규정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밝히기 위해 두는 것으로서 법령의 목적 조문 다음에 별도의 조문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용어가 나오는 조문에서 괄호 안에 그 의미를 밝히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반대로 조문에서 의미를 자세히 밝혀주고 이를 한 단어로 약칭하는 방식도 사용된다. 예컨대, “출자총액(취득하거나 소유하려는 다른 국내주식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고, “취득하거나 소유하려는 다른 국내주식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하 “출자총액”이라 한다)”이라는 방법으로 약칭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는 정의 조항에서 “이 법에서 “출자총액”이란 취득 또는 소유하려는 다른 국내 주식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것과 같은 기능이 있다. 다만, 용어의 정의 규정은 통상적으로 총칙 규정에 위치하므로 찾기 쉬운 반면 약칭은 어디에서 약칭을 했는지 찾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정의 규정으로 두되, 중요하지 않거나 인접한 조문 간에만 사용되는 용어는 약칭으로 둘 수도 있다.

#### 나) 약칭의 위치

행정규칙에서 약칭을 사용하려면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되,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최초로 나오는 용어가 그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는 부분과 떨어져 있으면 자주 사용되는 부분의 첫 번째 용어에서 약칭할 수 있다.

#### 다) 행정규칙의 약칭

약칭은 약칭이 사용된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약칭이 사용된 법령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약칭해야 한다.

1

2

3

4

5

### 라) 약칭 사용의 제한

약칭은 일반 국민이 행정규칙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되므로 지나친 약칭 사용을 피하고, 필요할 때에만 적절하게 사용하되, 행정규칙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는 용어 정의 조항에서 용어를 정의하는 방법을 취한다. 특히 명사로만 연결된 용어를 단순히 글자 수를 조금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약칭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하고, 자주 반복되지 않는 약칭은 각 조문 단위로 약칭하도록 한다(예: 이 조, 제○조 및 제○조에서 같다'와 같은 형식). 정의한 용어를 다시 약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마) 약칭 사용의 정도와 방법

- ① 약칭은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약칭으로 이해가 어려워지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약칭하도록 한다.
- ② “A, B, C ~~”를 약칭할 때에는 “A”로 약칭하는 것을 피하고 “A, B, C ~~” 등의 공통 요소를 모아 새로운 용어로 약칭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하면 “A등”으로 약칭하고 이 경우 “등”은 붙여 쓰도록 한다.
- ③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제명의 경우 약칭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근 제명이 길어지는 추세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 제명도 약칭할 수 있다.<sup>9)</sup>
- ④ 약칭은 그 자체만을 보고도 생략된 어절이나 단어군의 의미가 쉽게 파악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생략된 어절이나 단어군의 의미와 달리 오인될 수 있는 약칭은 피한다.
- ⑤ 두 단어 이상으로 약칭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수식어 사용을 피하고 명사구로 해서 붙여 쓰되, 부득이 수식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띄어 쓰도록 한다. 법률이나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명을 약칭하는 경우에는 붙여 쓰도록 한다.
-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경우에는 통상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등으로 약칭한다.

9) 서로 다른 법령 제명 약칭을 사용하게 되면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제공되고 있는 법령 제명 약칭을 사용하도록 한다.

## 2) 준용(準用)

### 가) 준용의 의의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준용 방식은 동일한 규정의 반복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입법 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규율 대상이 유사하고 입법의 간결성을 기하려는 경우에 주로 활용한다.

그러나 준용 규정의 속성상 준용하는 규정만으로는 무엇이 법령의 내용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다른 법령 규정을 함께 보아야 법령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규정 내용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준용 대상 규정의 범위 및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을 가져오거나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준용 방식을 사용할 때에는 입법경제의 실익과 수범자의 법규 이해의 난점을 비교 형량하여 준용할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 나) 준용문의 규정 방식

#### ① 기본 규정 방식

“○○에 관하여는 (~~에 관한) 제○조를 준용한다.”로 표현한다. 후단에서 다른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제○조를 준용한다.”로 표현하고, 준용되는 조항의 내용이 간단 명료하게 이해될 수 없으면 다른 규정의 준용으로 인한 법 해석상의 오해가 없도록 준용되는 조항의 각 부분의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어 명백하게 표현하도록 한다(예: 이 경우 “A”를 “B”로, “C”를 “D”로 본다).

#### ② 준용 규정의 인용

어떤 조문에서 다른 조문을 인용할 때에 그 다른 조문이 준용하는 또 다른 조문까지 포함시켜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문의 성질에 따라 “제○조(제○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조에 따른”, “제○조에서 준용되는 제○조에 따라”, “제○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조에도 불구하고/제○조를 위반하여”로 표현한다.

1

2

3

4

5

#### 다) 준용과 구별해야 할 표현

‘준용한다’와 유사하긴 하나 구별해야 할 표현으로 ‘적용한다’와 ‘예에 따른다’라는 표현이 있다. ①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문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그와 성질이 같은 다른 규율 대상에 사용할 때에는 ‘적용한다’로 표현한다. ‘적용’은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조문의 규율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 ②‘준용한다’는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하여 준용할 경우에 사용하나, ‘예에 따른다’는 어떠한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른 규율 대상에 준용하려고 할 경우에 사용한다.

#### 라) 준용 규정 시 유의 사항

위에서 언급한 사항 외에도 준용 규정을 둘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도록 한다.

- ①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에서 상위법령을 준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위임을 받아 정하는 위임 행정규칙의 경우 그 위임의 범위와 한계 안에서 위임(재위임인 경우에는 그 본래의 위임)한 상위법령과 동위(同位)의 관련 법령을 준용할 수는 있다.
- ②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나 실체적인 요건·기준, 권한 등에 관한 행정규칙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입법의 명확성 차원에서 준용 방식을 사용하기보다는 직접 관련 내용을 규정하도록 한다.
- ③ 준용 방식을 취하는 경우 준용 대상은 개정이 빈번한 규정보다는 개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규정을 대상으로 하거나 준용 대상이 되는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내용을 그대로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어떤 규정을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 조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행정규칙 전체를 준용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준용 방식은 준용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 준용 규정을 두기보다는 대상 조문을 특정하여 준용하도록 한다.
- ⑤ 준용이 가지는 성격상 준용된 규정을 다시 준용하게 되는 경우 법문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준용되는 조문의 범위 등에 대해 해석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준용된 규정을 다시 준용하지 않도록 한다.

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

5

부 록

---

- 관계 법령
- 행정규칙 제정·개정 체크리스트

# 5

## 부록 | 관계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행정기본법

### 제1장 총칙

####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 2)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등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3.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1

2

3

4

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령등과 제도를 정비·개선할 책무를 진다.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절 기간 및 나이의 계산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령등을 공포한 날(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은 고시·공고 등의 방법으로 발령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제2장 행정의 법 원칙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행정작용

## 제1절 처분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1

2

3

4

5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절 인허가의제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는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절 공법상 계약

**제27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하 “공법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절 과징금

**제28조(과징금의 기준)**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사유
3. 상한액
4.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5.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할 때에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절 행정상 강제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지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3. 직접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4. 강제징수: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5.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②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횡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1

2

3

4

5

3. 그 밖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2조(직접강제)**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3조(즉시강제)**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책임자는 즉시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공고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에도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

##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5조(수수료 및 사용료)** ① 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행정청은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 제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취소·철회·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

부터 기산하여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 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⑥ 행정청의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제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의 재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4.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행정의 입법활동”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2. 법령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법령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 ③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및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행정법제의 개선)** ①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일관된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 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법령해석)** ①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소관기관”이라 한다)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령소관기관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소관 법령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집행할 책임을 진다.

③ 법령소관기관이나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정보”란 법령등과 법령관련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2.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조약(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다.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 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법령관련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 해당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 나.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한 입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에 관한 추계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 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의견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시례
4. “법령정보 생산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5조(법령정보의 수집)** 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법령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1. 관보를 이용하여 수집하는 방법
  2.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법령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②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 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직접 등재하여야 한다.
1. 법제처장이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법령정보
  2.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할 경우 정확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법령정보
- ③ 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받은 법령정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의 수집, 등재 또는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제처장은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법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현행(現行) 헌법, 법령 및 조약
  2. 헌법, 법령 및 조약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마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연혁(沿革) 헌법, 법령 및 조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
- ② 법제처장은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일상생활이나 기업·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등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④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법령정보의 수집)**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공보를 이용하여 수집하는 방법
  2.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하는 방법
- ②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령등
  2.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령관련정보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이하 “행정규칙”이라 한다)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행정규칙 전문(全文)
2. 조문별 제정·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관한 설명자료
- ④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등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

1. 현행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 현행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4. 그 밖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법령정보
- ② 법제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이하 “연관법령정보”라 한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연관법령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
  2. 연관법령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3. 연관법령정보에 대한 주기적 정확성 검사
  4. 연관법령정보의 보급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표준 연구 및 지정
- ③ 법제처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1호에 따른 정기적 구조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 구조진단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3.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4. 법령정보시스템의 운영 현황 모니터링

1

2

3

4

5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고
2.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한 공고

②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온라인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행정청은 제5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46조의2(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예고방법 등)** ① 행정청은 정책등안(案)의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법안”은 “정책등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처분을 할 때”는 “정책등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로 본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3조(행정예고 통계의 공고)** ① 행정청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행정예고 통계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총 예고 건수
2. 고시, 훈령, 예규 등 예고 대상별 건수
3. 관보·공보, 인터넷, 신문·방송 등 예고 매체별 건수
4. 예고 기간별 건수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참고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다.

##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규정"이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하 "WTO TBT협정"이라 한다) 부속서 1 "1. 기술규정"에서 정의한 것을 말한다.
2. "적합성 평가절차"란 WTO TBT협정 부속서 1 "3. 적합성 평가절차"에서 정의한 것을 말한다.

**제7조(행정예고기간)** ①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고시·훈령 및 예규(이하 "고시등"이라 한다)의 수립·시행 또는 변경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

②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고시등의 수립·시행 또는 변경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예고사항의 통지등)**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WTO TBT협정 및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WTO 사무국과 자유무역협정 상대국가에 예고내용을 통보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 상대국가에 대한 통보는 우리나라와 체결하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통보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2

3

4

5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7.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8.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9.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10.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폐지·완화가 필요한 기존규제 대상
  12.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4조의3(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 ①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제정

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예규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제25조(훈령·예규등의 사전 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제처장에게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토의견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정·개정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정·개정 내용이 법령에 위임 근거가 있는지 또는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3.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정·개정 내용이 다른 훈령·예규등과 중복·상충되는지 여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의2(훈령·예규등의 사후 심사·검토)** ① 법제처장은 제2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등재된 훈령·예규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관련 법령 또는 해당 훈령·예규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령·예규등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개별 위원회의 심의 등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심사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정비할 계획인 경우에는 그 정비계획
3. 심사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20조(훈령·예규 등의 사전 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의 발령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및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에 관한 서류
  2. 그 밖에 훈령·예규등의 제정·개정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검토에 필요한 서류
- ② 법제처장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을 검토하는 경우 그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예규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예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를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1. 필요성: 훈령·예규등은 법령(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집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할 것
2. 적법성: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할 것
3. 적절성: 행정기관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

4. 조화성: 다른 훈령·예규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  
을 것
5. 명확성: 국민이 훈령·예규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  
용하여야 하며, 재량권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훈령·예규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국민  
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  
관 훈령·예규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예규등에 대하여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감사원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발령하는 훈령·예규등
2.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고시·공고
3. 일일명령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될 것이 예정되지 아니한 일회성 지시

**제4조(다른 훈령·예규등과의 관계)** 이 훈령은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훈  
령·예규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훈령·예규등의 발령 형식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을 발령하려는 경우  
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훈령·예규·지시·고시·공고의 형  
식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2조에 따라 업무편람을  
작성·활용하는 경우 법령 또는 훈령·예규등에 규정된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다른 기준 및 절차 등을 추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견수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을 입안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기간은 해당 훈령·예규등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또는 「행정  
규제기본법」에 따른 행정규제의 신설·강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훈령·예규등을 입안하는 경  
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기

간은 훈령·예규등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2(훈령·예규등에 대한 이견 조정)** ① 국무조정실장은 훈령·예규등의 발령안(해당 훈령·예규등이 발령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이견 조정과 관련하여 법리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그 검토 결과를 국무조정실장,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의 발령안(해당 훈령·예규등이 발령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리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요청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그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끝낸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견 있는 부분이 법리적 사안이 아닌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서 이견 해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7조(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해당 훈령·예규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예규등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1.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훈령·예규등
  2.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사유로 훈령·예규등을 폐지·제정하기 곤란한 훈령·예규등으로서 법제처장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로 협의한 훈령·예규등
- ②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령·예규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1. 상위 법령에 3년 이상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우로서 상위법령과 다른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2. 해당 훈령·예규등의 조항에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우
  3. 그 밖에 해당 훈령·예규등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3년 이내로 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1

2

3

4

5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이 만료되기 전에 훈령·예규등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히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훈령·예규등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 존속기한을 개정하거나 해당 훈령·예규등을 폐지한 후 재발령  
나. 재검토키한이 설정된 경우: 재검토키한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개정

2. 훈령·예규등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훈령·예규등을 폐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예규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재되지 아니한 훈령·예규등으로서 법제처장과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을 정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훈령·예규등
2. 보직·승진·기록관리·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예규등

**제8조(존속기한 등에 대한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법제처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훈령·예규등을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예규등을 발령하기 1개월 전까지(「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는 때까지) 법제처장에게 그 발령안을 송부하여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의 설정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예규등을 긴급히 발령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훈령·예규등을 발령한 후 지체 없이 이를 법제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발령안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의 설정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이 되는 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과 서로 충돌되지 아니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훈령·예규등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예고, 법제처장과의 협의 등 훈령·예규등의 발령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훈령·예규등을 발령하고 이를 대장에 기록·보존하

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을 발령한 경우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거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그 제명과 비공개사유를 통보하고 법제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훈령·예규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 또는 부속기관 소관의 훈령·예규등이 이 훈령에 따라 발령·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령·예규등의 점검 등)** 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훈령·예규등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만료시기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훈령·예규등이 이 훈령에 따른 절차와 방식에 따라 발령·관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정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훈령·예규등이 이 훈령에 따라 발령·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등의 입안 담당자에게 교육을 하고, 현황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훈령·예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2

3

4

5

5

부록 | 행정규칙 제정·개정  
체크리스트

※ 확인란에 모두 “예”로 체크되어야 함

구 분	확 인
<p><b>1 발령 형식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령·예규·고시의 내용에 맞게 행정규칙의 형식을 정하였는가?</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령: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행사를 일반적 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 예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교육부훈령)</li> <li>• 예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 * 예시: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국민권익위원회예규)</li> <li>• 고시: 법령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법령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거나,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 예시: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고시(성평등가족부고시)</li> </ul> </div>	<p><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 법령에서 행정규칙의 형식을 고시·훈령 등으로 특정한 경우, 그에 맞추어 발령하였는가?</li> </ul>	<p><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p>
<p><b>2 규제 포함 행정규칙 사전검토 요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예고 및 자체 규제심사를 완료하였는가?</li> <li>■ 규제영향 분석서를 작성하였는가?</li> </ul>	<p><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p>

구 분	확 인
<b>③ 행정규칙 등재 및 사후심사 요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령·예규·고시 등 발령번호를 부여받았는가?</li> <li>■ 관보 게재(고시 등 필요 시), 홈페이지 등재 등을 하였는가?</li> </u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b>④ 본 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허가, 신고 등) ① 인·허가, 신고, 승인, 지정, 인정, 인증 등 및 그 취소·정지가 법령에 근거가 있는가?            ② 인·허가 등과 그 취소·정지의 사유가 법령과 동일한가?            ③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이 법령에 근거가 있는가?            ④ 변경 인·허가,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이 법령에 근거가 있는가?            ⑤ 휴업·폐업 등의 신고 의무가 법령에 근거가 있는가?</li> </u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격사유) 결격 사유가 법령에 근거가 있는가?</li> </u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제재처분) 거래정지, 입찰제한 등 제재적 처분이 법률에 근거가 있는가?</li> </u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징금·과태료 등) ①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및 그 대상·기준 (가중·감경 포함)·절차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가?            ② 행정규칙에서 과징금 기준 등을 정하는 경우 법령에 위임 근거가 있는가?</li> </u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수료·사용료·부담금) ① 수수료·사용료·부담금에 대한 법령 근거가 있는가?            ② 수수료·사용료·부담금 부과·감면·면제의 사유 및 범위 등이 법령에 부합하는가?</li> </u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보상 등 제한) ①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지원·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가?            ② 지원·보상 등 제한에 대한 상위 법령의 근거가 있는가?</li> </u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신고·자료제출) ① 출입검사 등 행정조사에 대한 상위 법령의 근거가 있는가?            ② 보고·신고·자료제출의 대상 및 범위가 상위 법령과 동일한가?</li> </u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1

2

3

4

5

구 분	확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임·위탁·민간위탁) 위임·위탁·민간위탁이 법령에 근거가 있는가?</li> </u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식) ① 상위 법령과 동일한 서식인지?</li> <li>② 상위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만을 제출 요구하는지?</li> </u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존속기한 등) ①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였는가?</li> <li>②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였는가?</li> <li>③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사유로 법제처장과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기로 협의하였는가?</li> <li>④ 상위 법령에 3년 이상 존속기한 등이 설정된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재검토키한을 설정하였는가?</li> </u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b>5 부 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일) 시행일을 규정하였는지?</li> </u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례) 시행일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제정·개정된 행정규칙의 적용 대상과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명확히 하는 적용례를 두었는가?</li> </u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례) 한정된 기간이나 대상에 대하여 종전 또는 개정 행정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다른 내용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 특례를 규정하였는가?</li> </u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과조치) 행정규칙 개정 이후, 특정 대상에 대하여 종전 행정규칙을 적용 하여야 할 경우, 이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는가?</li> </u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b>6 기 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규칙을 비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규칙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 비공개(부분 비공개 포함) 시 행정규칙 제명 및 비공개 사유 기재 문서 법제처 송부</li> </u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구 분	확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권 침해) ① 「지방자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으로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li> <li>②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정부에 행정상 의무를 부과하거나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 중앙정부에 대한 사전승인·보고·통보·협의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가?</li> <li>③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전국적·일률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li> </u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1

2

3

4

5



행정규칙  
인안심사  
기준

발행일 2025. 12.

발행처 법제처 법제지원국 행정규칙심사정비팀

주 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7-1동)

전 화 (044) 200-6940, 6941, 6944,  
6945, 6535

인 쇄 ㈜경성문화사 (044) 864-5577

